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소득과세, 소비과세 그리고 토지과세의 합리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자산과세 중 相續課稅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다른 租稅制度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면개편이 있었으나 相續稅法은 6·25 전인 1950년에 제정된 이래 전면적 개정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부분적 개정만이 반복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의 시대에 제정된 相續課稅制度를 1인당 7,300달러 시대인 지금까지 그 基本骨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落後性을 수반하게 한 것이다.

相續課稅에서 얻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속과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富의 分散 내지 그 集中을 抑制하는 기능 때문에 지대하다. 또한 상속과세가 적정하게 실현된다면 富의 세습으로 인한 성취기회의 不公平을 상당히 감소시켜 새로 태어나는 다음 世代로 하여금 보다 개선된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그간의 經濟開發年代를 거치면서 富가 과도하게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相續課稅制度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相續課稅制度는 재정수요의 充足 못지않게 그 課稅方法이 富를 각 계층에 고루 분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능이 제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방안이 현행 遺産課稅方法에서 取得課稅方法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富의 貯量增大와 偏重으로 인하여 그 분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는 相續課稅의 적정한 실현을 더욱 중요한 조세상의 과제로 부상시키

고 있다. 또한 租稅脫漏가 가장 극심한 조세분야가 相續稅인바, 이는 제도의 합리화와 과세행정의 강화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相續課稅制度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그만 노력의 시도이다. 부족하나마 相續課稅制度의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相續課稅에 관한 연구가 여러 사람의 참여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韓國租稅研究院의 研究用役 의뢰로 수행되었으며, 서울市立大學校 崔明根 교수에 의하여 연구결과가 집필되었다. 학교 수업으로 바쁜 중에도 연구에 참여해 준 데 대하여 감사한다.

이 연구에 담긴 내용과 방안의 제시는 전적으로 집필자 자신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밝혀 두고자 한다.

1993年 10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第1章 序 論	13
第1節 相續課稅의 機能	13
第2節 相續課稅制度에 대한 基本視角	14
第2章 相續課稅의 基本理論	17
第1節 相續課稅의 根據	17
1. 回避租稅精算說	17
2. 應能負擔力說	18
가. 支出(expenditure) 基準	18
나. 貯蓄(saving) 基準	19
다. 富(wealth) 基準	19
라. 所得(income) 基準	20
3. 結言	21
第2節 相續課稅와 富의 集中抑制	23
1. 序言	23
2. 相續課稅의 目的	24
가. 稅收目的	24

나. 富의 分散目的	25
3. 富의 不平等 生成原因	28
가. 財産의 相續	28
나. 富의 自手成就	31
4. 相續課稅와 富의 集中抑制 機能	32
가. 富의 分散政策으로서의 限界	32
나. 富의 分散問題와 課稅類型의 選擇	34
第3節 相續課稅의 經濟的 影響	35
1. 相續課稅의 歸着	35
2. 相續課稅와 創意的 經濟活動	37
3. 相續課稅와 生産資本과의 關係	38
가. 生産資本에 미치는 影響	38
나. 相續重課稅와 資本逃避의 問題	42
4. 貯蓄과 投資에 미치는 影響	43
가. 貯蓄에 미치는 影響	43
나. 投資에 미치는 影響	45
다. 結言	46
第3章 取得課稅型의 導入方案 摸索	48
第1節 課稅類型과 그 選擇	48
1. 課稅類型의 概觀과 그 評價	48
가. 遺産課稅型	48

나. 取得課稅型	49
다. 課稅類型的 比較·評價	51
2. 選擇基準과 課稅類型과의 關係	53
가. 應能負擔 基準	53
나. 富의 分散 基準	54
다. 家族共同體의 物的 基礎 保護基準	55
라. 稅收와 稅務行政 基準	56
마. 結言: 우리에게 맞는 課稅類型	58
第2節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	60
1. 相續稅 基本構造의 設計	60
가. 納稅義務者와 連帶納付	60
나. 納稅地와 管轄	62
다. 課稅物件과 非課稅 財産	63
라. 課稅價額과 課稅標準의 算定	64
마. 具體的 計算例	69
바. 贈與額의 相續財産에의 累積合算期間	72
2. 贈與稅 基本構造의 設計	72
가. 序言	72
나. 納稅義務者와 連帶納付責任	73
다. 贈與稅 課稅財産과 非課稅財産	74
라. 課稅期間과 年間控除	75
마. 贈與人的控除	76

바. 課稅標準의 算定	77
사. 贈與와 贈與의 累積合算期間	78
아. 贈與稅申告	78
3. 贈與稅와 相續稅의 統合 및 稅率	79
가. 贈與課稅의 目的	79
나. 贈與課稅의 統合方法	80
다. 稅率構造에 대한 理論的 檢討	84
라. 相續·贈與에 대한 統合稅率의 構想	90
마. 相續稅額 計算과 그 例	91
4. 贈與에 대한 稅制外的 抑制要因	93
가. 死亡豫見에 대한 躊躇와 不確實性	94
나. 統制力 喪失에 대한 憂慮	94
다. 租稅法에 대한 知識의 不足	95
라. 子女에 대한 憂慮	96
第3節 配偶者間 財産相續의 課稅方法	97
1. 基本方向	97
가. 現行 課稅方法과 主要國間 比較	97
나. 輕減의 根據	99
2. 全額控除法과 1/2控除法에 대한 檢討	104
가. 全額控除法과 그 批判	104
나. 1/2控除法과 그 批判	106
3. 우리에게 맞는 輕減方法	108

가. 配偶者控除의 改善 必要性	108
나. 具體的 改善方法	109
다. 計算事例 例示	111

第4章 世代省略移轉과 無償移轉 資本利得 課稅 118

第1節 世代省略移轉稅의 導入

1. 意義	118
2. 美國의 立法	119
가. 1969年 美國 財務部의 提案	119
나. 1976年의 立法과 1986年의 改正	120
3. 우리나라로의 導入 摸索	122
가. 檢討의 必要性	122
나. 課稅方法	123

第2節 無償移轉과 資本利得課稅

1. 문제의 提起	125
가. 檢討의 必要性	125
나. 無償移轉에 대한 現行 資本利得課稅	125
2. 無償移轉時 資本利得課稅의 論據	126
가. 肯定論	126
나. 批判論	128
3. 主要國의 論議와 課稅	129
가. 美國의 經驗	129

나. 英國의 現行 制度	130
다. 日本의 現行 制度	131
4. 課稅方法과 그 選擇	132
가. 課稅方法	132
나. 課稅方法의 選擇	134
다. 取得課稅型과의 關係	137

第 V 章 要約 및 結論	139
----------------------------	------------

參考文獻	146
-------------------	------------

表 目 次

<表 Ⅲ-1> 實地課稅價額 算定表	70
<表 Ⅲ-2> 各 相續人別 法定相續分 課稅標準 計算表	71
<表 Ⅲ-3> 各 相續人別 實地取得分 課稅標準 計算表	71
<表 Ⅲ-4> 우리나라의 相續稅와 贈與稅의 稅率表	85
<表 Ⅲ-5> 主要國의 稅率構造 比較1	85
<表 Ⅲ-6> 相續稅 稅率表(試案)	91
<表 Ⅲ-7> 法定相續分 課稅標準에 대한 稅額計算表	92
<表 Ⅲ-8> 各 相續人 등의 納付稅額 計算表	93
<表 Ⅲ-9> 主要國의 配偶者 財產相續課稅 比較	97
<表 Ⅲ-10> 配偶者 相續婚姻 控除額表(試案)	112

第1章 序 論

第1節 相續課稅의 機能

미국의 McNulty 교수는 바람직한 相續課稅制度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

첫째, 後代에 巨大한 富가 세습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制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課稅가 資本의 蓄積動機를 극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富의 分散問題이다.

둘째, 상속과세는 일반사람이 公平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자는 같게 취급되어야 하며, 本質의인 內容은 같은데 形式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負擔上의 괴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應能負擔을 전제로 한 公平性의 문제이다.

셋째, 과중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租稅收入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租稅行政費用이 과다하지 않고 납세자들이 順應하기 쉬워야 한다. 이것은 稅收와 租稅行政의 問題이다.

넷째, 재산 무상이전에 대한 租稅는 상속과세와 소득과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兩者間의 補完과 調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특히 重要한 문제는 상속과세와 資本利得課稅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各 課稅類型과 公平(應能負擔), 富의 分散, 家族共同體의 물적기반의 保護, 稅收와 行政의 상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實

1) John K. McNulty,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Publishing, 1983, pp. 458~459.

情에 맞는 과세유형의 선택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 하나 상속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生前移轉 財産, 즉 증여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補完機能에 충실해야 한다. 分離型으로 할 것인가 統合型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의 보완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第2節 相續課稅制度에 대한 基本視角

근래 수년 동안, 특히 재벌총수들의 변칙적인 富의 無償移轉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를 수반하는 富의 世襲에 의하여 富의 집중이 가속화된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어떤 政治家는 “富의 世襲은 그 경제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카네기는 “자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남겨주는 것은 마치 알콜을 過飲시키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才能과 創意를 말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어떤 學者는 富의 세습화를 기회균등의 문제와 관련시켜 “성공의 결승점을 향한 달리기에서 유리한 출발점(with head-starts)이 설정된 경주와 장애물(with handicaps)이 설정된 경주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機會의 不平等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계층으로의 과도한 富의 집중은 사회구성원들의 階層上昇 의욕을 저해하여 사회의 발전지향적 力動性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의 역사는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

위의 모든 표현은 私法上的 재산상속제도에서 야기되는 富의 집중 현상을 조세정책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완화시켜야 한다는 命題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과세를 통한 富의 분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相續課稅上 沒收稅率을 설정하면 어떨까? 이러한 주장은 진보적인 생각

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주장되고 있는 견해이다. 이렇게 한다면 富는 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相續課稅制度는 자유 시장경제를 그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사회와 조화되기 어렵다. 19세기 초 美國의 대통령 후보였던 McGovern은 그의 政見으로 相續稅의 몰수세율을 제안했던바, 유권자들은 이를 재산상속권 그 자체가 위협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노로 응답했던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沒收稅率의 相續課稅制度下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가 靑·壯年期에 축적한 富를 老年期에 가까워지면서 모두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民富의 蓄積動機가 말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업가들의 경제적 창의를 租稅制度가 저해하면서 유린하는 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所有의 下向的 平等化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경제체제의 대다수 나라들이 無償移轉되는 富의 半 정도를 租稅로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상속과세의 세율을 국민들이 지키기 어렵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만이 社會正義를 實現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노력하여 저축한 사람은 그가 축적한 富의 半 정도를 그의 혈육에게 상속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만 그 半 정도를 사회에 환원시키기로 한 國民의 合意는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상속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富를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더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속과세의 회피를 봉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3대에 걸친 상속과세로써 富의 集中은 抑制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富의 집중현상은 상속과세를 통하여 단시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相續課稅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도 富의 집중을 완화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相續課稅의 기능의 한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몇해 동안에 사회문제가 된 富의 變則的 相續과 贈與는 이러한 최저한의 국민적 합의마저 背信한 행위이고, 또한 相續課稅制度 그 자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무상이전되는 富가 지니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課稅에 의하여 富의 分散을 유도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상속과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第2章 相續課稅의 基本理論

第1節 相續課稅의 根據

1. 回避租稅精算說

이 견해는 準神聖不可侵하다고 보는 財産相續에 대하여 정면으로 課稅의 正當性 내지 根據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과세를 우회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소극적인 이론이다.

그리하여 回避租稅精算說은 생존시에 逋脫 또는 回避한 조세의 後拂이라는 의미에서 事後課稅說(the back tax doctrine)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사망한 사람이 生存時에 財産의 蓄積過程에서 財産稅·所得稅 등을 脫稅 또는 回避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탈세가 없었더라면 그 稅額 상당은 被相續人이나 相續人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脫稅 또는 回避된 조세를 精算하기 위해서는 財産축적자의 사망시점에 상속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¹⁾.

그런데 이 이론은 상속과세의 부담이 상속인에게 歸着된다고 볼 때 被相續人의 脫稅 또는 回避行爲에 대하여 상속인을 징벌하는 모순을 內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者가 그의 生存時에 포탈 또는

1) Willam J. Shultz, *The Taxation of Inheritance*, Boston: Houghton Mifflin, 1926, pp. 183~184. 여기에서는 상속세를 회피한 재산세의 後拂로 이해하고 있다. 日本稅制調査會, 「1957.12, 相續稅制度改正に關する答申」, 『稅制の抜本的 見直しについての答申 報告 審議資料總覽』(1988).

回避한 租稅額의 合計와 사망시점에서 課稅하는 相續稅額 사이의 相關關係를 計數的으로 관련시켜 證明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견해도 비유적 설명의 限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應能負擔力說

상속과세의 根據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상속세를 당해 相續 財産 자체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상속세를 物稅 내지 非人稅(an impersonal tax)로 보고 있다. 그런데 應能負擔力說은 상속세를 人稅(a personal tax)로 보면서²⁾, 상속과세의 구조를 모색하여 피상속인·상속인·가족의 集團을 기준으로 그들의 事情·環境·相續되는 富의 크기를 고려, 相續稅의 擔稅能力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 特徵이 있다. 그런데 이 理論의 核心概念인 租稅負擔能力의 基準(the criterion of tax paying ability)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다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가. 支出(expenditure) 基準

個人的 支出이 擔稅能力의 測定基準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見解는 저축에 대하여 租稅를 부담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경제발전의 活力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담세능력의 基準이 그렇다고 한다면 相續人은 상속유산의 일부만을 消費할 것이므로 가벼운 負擔의 상속세는 정당하다고 한다. 또한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疎遠한 상속인이나 증여자와 친족관계가 소원한 受贈者는 그들이 無償取得하는 財産을 橫財한 것(windfall)이라고 인식하여 그 대부분을 소비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세에 있어서 親等親疎에 따른 稅率上의 差別을 두는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³⁾. 그런데 이 見解

2) Harold M. Groves, "Retention of Estate and Gift Taxes", *Cal. L. Rev.*, Vol.38 (Mar. 1950), p. 30. Groves는 상속과세를 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전제하고, 상속과세를 人的課稅化하는 것은 應能負擔의 提高面에서 좋은 代案이 된다고 보았다.

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貯蓄(saving) 基準

담세능력의 表象物은 貯蓄이라고 전제하고, 상속과세는 相續人·受贈者의 擔稅能力에 기초를 두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被相續人·贈與者의 과거의 貯蓄에다 擔稅能力을 인정하여 이에다 부담을 지우는 制度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Shultz 교수의 주장인바, 遺産課稅型 相續稅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다. 富(wealth) 基準

或說은 피상속인, 증여자 등 移轉者를 기준으로 生前移轉이나 死後移轉하는 財産價値 그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의 擔稅力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의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한다³⁾. 이는 그 本質에 있어서 被相續人·贈與者의 저축에다 相續稅의 擔稅能力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반대로 相續人·受贈人 등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財産의 무상취득을 擔稅能力의 증가로 포착하고 이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상속인·수증자 등이 스스로의 努力으로 축적한 富와 受贈·相續으로 취득한 富를 모두 고려하여 擔稅能力을 측정한 결과에 과세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이는 被相續人 등이 축적한 富를 이전 받은 것과 相續人 등이 스스로 축적한 富를 모두 합쳐서 상속세의 擔稅能力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속과세하는 稅率이 累進的이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限界稅率은 무상취득한 財産額의 크기에 따라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 무상취득 재산액과 무상취득 직전까지 유산의 무상취득자 스스로의 努力으로 축적한 富를 合算한 금액에 따라 적용

3) Shultz, *op. cit.*(1926), p. 187.

4) *Ibid.*, p. 188.

되어야 擔稅力에 맞는 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무상취득 재산에다 상속세 등 부담을 지움에 있어서 스스로 축적한 富를 이에다 관련시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主張은 아직까지 그 以上の 理論的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 所得(income) 基準

擔稅能力의 기준을 所得이라고 보는 見解에서는 상속받은 財産, 受贈財産이 모두 무상취득자의 所得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다만 재산의 무상취득을 特別形態의 所得으로 보아 과세방법을 달리할 것인가, 通常所得(ordinary income)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綜合所得으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데 의견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相續財産 등을 무상취득자가 받은 특별한 形態의 所得이라고 보면서 비규칙적·비반복적·우발적인 이러한 형태의 소득은 通常的인 年間所得에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이 論理에 맞고, 다만 個人所得稅에 대한 補完裝置(back-stop)로서 相續稅 등을 별도로 課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무상취득 재산이 특별한 형태의 所得이라는 點을 강조하여 상속세를 特別所得稅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⁶⁾. 이와 같이 상속 등에 의해 무상취득하는 재산을 특별한 형태의 소득 내지 橫財性·偶發性 所得이라고 보면 상속과세에 있어서 그 稅率構造의 누진성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이 理論은 취득과세형 相續稅 및 승계과세형 相續稅의 根據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 課稅類型의 누진세율구조에 대해 正當性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

5) Seligman, R.A. Edwin, *Essays in taxation*(The Macmillan Co., 1921), p. 134 ; Shultz, *op. cit.*(1926), p. 189 ; J. Kurtz & S.S. Surrey, "Reform of Death and Gift Taxes : The 1969 Treasury Proposal the Criticism and Rebutal", *Columbia L.Rev.*, Vol. 70(Dec. 1970), p. 1367.

6)金子宏, 「相續課稅の課稅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制改革の視點 : 地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月刊 稅理 第1別冊附錄(東京:きょうせい, 1987), p. 168.

이 擔稅能力을 客觀的으로 인식하는 경우 取得課稅型 상속세에서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親等親疎에 따른 세율상 차별과세를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무상취득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擔稅능력으로서의 經濟價値에는 차등이 없는 것인데, 사망한 사람과의 친족관계(寸數)가 멀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받는 稅率上에서 輕重의 差別을 두는 것은 合理性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부담능력을 부담자의 主觀的 觀點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理論에서는 親等親疎에 따른 稅率上으로 차별과세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合理化하고 있다⁷⁾.

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家族原理(the family principle), 悲歎論理 등 다양한 理由가 제시되었다. 그 중 가장 합리성이 있는 것은 經濟學上의 限界效用의 均等犧牲理論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疎수가 疎遠한 者は 財産相續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限界效用을 희생시키면서 느끼는 고통은 작을 것이고, 반대로 직계상속인들은 財産相續을 기대하면서 생활해 왔고 사망한 자와 혈족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限界效用을 희생시키는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이 더 큰 사람에게 적용되는 稅率을 낮게 하고, 그 고통이 작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稅率을 높게 하는 것은 限界效用의 均等犧牲의 觀點에서 볼 때 合理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3. 結言

첫째, 상속과세는 財産의 私有化가 인정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 조세제도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私有가 天賦의 自然權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權利이듯이 財産의 相續·承繼權도 自然權이 아니고 실정법 질

7) Shultz, *op. cit.*(1926), p. 261~263 ; 吉岡建次 外 2, 『シャウフ° 勸告の研究』, 東京:時潮社, 1984, p. 268 ;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the Shoup Mission", 1948, p. 88 ; 『昭和財政史 : 租稅(2)·稅務行政』, 第8券附錄, 東京:東洋經濟, 1979.

서가 보장한 法の 創造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財産相續에 대하여 國家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基本秩序의 내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限界 안에서 課稅의 형태로 그 일부를 國家가 징수할 수 있다고 본다. 그 限界는 마땅히 私有財産制度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基本秩序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상속과세는 위에서 밝힌 立場의 延長線에서 國家가 財産相續에 대하여 法律에 의해 條件을 붙이고 制限을 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의 하나가 相續財産에 대한 課稅라고 보고자 한다. 그 상속과세의 목적이 순수한 財政調達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政策的 目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근거는 통치권력에 內在하는 國家의 課稅權力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權力의 行使도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안에서 그 限界가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속과세의 法的 根據는 國家課稅權力說에서 찾고자 한다.

셋째, 조세는 어떤 稅目이든 經濟的 負擔이 그 屬性이다. 그러므로 조세의 根據는 法的 根據의 發見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다시 經濟的 根據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조세의 理想은 公平 負擔을 實現하면서 재정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그 公平은 水平的 公平(horizontal equity)의 차원을 넘어서 垂直的 公平(vertical equity)의 실현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한 公平은 경제력으로 표시되는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負擔으로 표시된다. 이렇다고 할 때 應能負擔力說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이다. 이 說 가운데서도 상속·증여에 의해 무상취득하는 재산을 특별한 형태의 소득으로 보는 이론을 취하고자 한다. 次元 높은 應能負擔의 실현은 무상취득재산을 通常所得에 包含하여 單一稅率表에 의해 所得稅를 과세하는 것, 즉 무상취득재산과 通常所得 간에 담세능력상 차이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思惟의 對象이 아니고 實踐의 技術인 것이다. 조세는 科學(science)이 아니고 技術(art)이라고 하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第2節 相續課稅와 富의 集中抑制

1. 序言

Harriss C. Lowell 교수는 경제학자가 正義에 근거를 두고 조세목록을 적는다면 상속과세는 가장 높은 序列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累進正義로 표현되는 垂直的 公平의 실현이 租稅正義의 本質(an essential of justness in taxation)이라고 이해할 때 상속과세는 누진부담에 적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증여 등에 의해 무상취득하는 개인의 富를 減少시키는 것 그 자체가 肯定的인 善(a positive good)이며, 이는 經濟力의 누적적 集中을 억제하여 經濟的 不平等을 시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⁸⁾.

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도 1935年 상속과세제도의 정비·강화를 강조하는 對議會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언·상속·증여 등에 의해 巨大한 富가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이전되는 것은 미국 국민의 理想과 感情에 調和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安全을 확보하려는 欲求는 자연스럽고 건전하다. 이러한 合理的인 상속은 적정하게 保障되고 있다. 그러나 巨大하게 集中된 富의 蓄積이 상속제도에 의해 移轉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축적된 富의 移轉은 상대적으로 少數인 사람들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雇傭과 福祉를 지배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힘의 集中을 永續化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經濟力을 상속받는 것은 마치 政治權力

8) Harriss C. Lowell, "Source of Injustice in Death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7, No. 4(Dec. 1954), p. 292 ; McNulty, *op. cit.*(1983), p. 458.

을 상속받는 것이 민주정부를 수립한 우리의 理想에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巨大한 富의 세습은 우리 世代의 理想에 배치된다. 巨大한 企業은 재산을 많이 상속받음으로써 活力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巨大한 富의 상속은 그것을 물려주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They bless neither those who bequeath nor those who receive). 상속 등에 의해 이전되는 經濟力에 과세하는 것은 經濟的 善의 健全한 分散(the healthy diffusion of economic good)에 공헌하고 있는 動的 狀態에 있는 富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靜的 狀態에 있는 富에 과세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⁹⁾.

위와 같이 볼 때 經濟力의 지나친 集中과 그의 상속에 의한 세습은 經濟的인 惡이고 經濟力의 고른 分散은 經濟的인 善이며, 이를 실현하는 手段으로서 상속과세의 適正化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속과세에 의해 얻는 稅收額은 보잘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相續課稅制度의 정비에는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 理由는 經濟的 善을 추구함에 있어서 租稅가 助力할 수 있는 方法 중 相續課稅制度가 가장 實效性이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2. 相續課稅의 目的

가. 稅收目的

상속과세도 그것이 조세제도인 한 財政財源의 調達, 즉 조세수입을 그 目的으로 한다. 相續課稅는 세수증대의 관점에서 볼 때 租稅行政費가 적게 들고, 납세자의 納稅順應(tax compliance)도 비교적 용이한

9) Harry J. Rudick, "A proposal for an Accession Tax", *Proceeding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Sacramento: National Tax Association, 1946), p. 184 ; Boris I. Bitter & Elis Clark,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4), p. 24.

조세이다¹⁰⁾. 그리고 국민의 經濟的 行態에 비교적 가벼운 衝擊을 주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 있어서 상속과세는 그 名目稅率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稅收額은 보잘 것이 없다¹¹⁾. 그래서 상속과세는 가끔 稅收目的을 달성하는 데는 무기력하다고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稅收觀點에 국한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相續稅收만큼을 經濟的 衝擊이 큰 소득과세로 메우거나 逆進負擔의 간접세로 메워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상속과세는 個人所得稅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보완장치(back-stop)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¹²⁾. 이러한 개인소득세와의 관계도 도의시킬 수 없다. 이것은 稅收機能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상속과세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理由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현대의 租稅는 稅收增大만이 唯一한 機能은 아닌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稅收發生을 기대하지 않는 租稅도 존재할 수 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속과세는 세수 기능에 주안점을 둔 租稅라기보다는 後述하는 富의 集中抑制 내지 그 分散이라고 하는 社會政策的 機能에 더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는 租稅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富의 分散目的

10) McNulty, *op. cit.*(1983), p. 458 ; Berngeim B. Douglas, "Does the Estate Tax Raise Revenue?", *Tax Policy and Economy*, ed. by L. H. Summers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87), p. 113.

11) 미국의 경우 1981~85년 동안 상속세의 세입비중이 1%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세수비중이 1985년 기준으로 2.4%이다(Berngeim, *op. cit.*, 1987, p. 113 ; 『稅制의 拔本的見直しについての答申 報告 審議資料總覽』, 1988, p. 39 등 참조).

12) McNulty, *op. cit.*(1983), p. 459 ; Bernheim, *op. cit.*(1987), p. 113.

13) Bittker(1984), p. 24. 이는 1906년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 잘 표현되고 있다. "(相續課稅의) 주된 目的은 이 나라가 永續하는 데 이익이 되지 못하는 巨富의 상속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Francis Bacon은 “富가 보다 均等하게 分散되어 있을 때 國家는 계속 번영한다”는 金言을 남겼고, J.S. Mill은 “한 사람이 적절하게 獨立하는 데 필요한 財産 이상을 相續에 의하여 取得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 사상이 富의 分散理論을 발전시킨 母胎이다. 富의 分散政策論은 당초에 사회주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지만 오늘에는 모든 自由主義者들도 이러한 상속과세의 사회정책적 목적을 異論 없이 받아들이면서, 다만 그 程度와 方法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富의 集中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財産相續에 대하여 가지는 態度는 나라와 민족마다 다를 수 있다. 大陸法系의 國家에서는 상속제도에 관한 法的 保障이 더 두터운데 그 예로서는 獨逸이 헌법 第14條에서 財産權과 나란히 相續權에 대하여 憲法的 保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상속과세의 稅率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限界를 劃定하는 뜻이 있다고 해석하고, 그 稅率이 一定限界를 초과하면 違憲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英美法系에서는 財産相續制度에 대하여 대륙법계의 나라들보다 彈力的이고 制限的이며 일찍부터 相續財産에 대한 累進課稅를 수용해 왔다. 즉, 사망한 者가 蓄積·形成한 富는 그의 一代限의 재산으로 보고 財産相續 과정에 상속과세를 개입시킴으로써 그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移轉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손에게는 그렇게 많은 遺産을 남겨줄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思想을 단적으로 表現한 사람은 Andrew Carnegie였다¹⁵⁾. 그는 ‘富의 福音(The Gospel of Wealth)’이라는 題目으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글을 발표했던 것이다. 즉 巨大한 富의 蓄積은 社會가 생산한 價値를 個人이 所有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므로 個人의 富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公平한 것이다. 상속인들이 그들의 先祖의 財産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相續

14) Shultz, *op. cit.*(1926), pp. 193~194에서 재인용.

15)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25 ; Prchman(1983), p. 226 ; Rudick, *op. cit.*(1946), pp. 181~182.

權은 그들 自身の 努力에 의하여 취득한 權利가 아니기 때문에 財産 相續權을 制限하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不公正한 것이 될 수 없다. 財産相續權 制限에 失敗하는 것이 오히려 機會均等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理想을 否定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企業을 경영하는 者가 富를 蓄積하는 것은 그들의 相續人들을 위한(for the sake of their heirs) 것이라기보다 富를 축적하기 위한 努力의 成就感(for the pleasure they get out of the struggle for accumulation) 때문이다. 그러므로 相續課稅는 創意的인 經濟活動에 대한 制動(a check on initiative)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rnegie는 '여러 가지 과세형태 중에서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상속과세를 찬미하였다. 그리고 아들에게 巨大한 富를 상속해주는 父母는 아들의 재능과 정력을 말살하며, 그렇게 많은 富를 상속해 주지 않았을 때보다 그들로 하여금 쓸모없고 가치 없는 生活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Carnegie가 巨富이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思想은 1789년에 Thomas Jefferson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에게 보낸 書翰에 이미 다음과 같이 表明되어 있다.

“토지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用益權(usufruct)에 속한다. 따라서 死亡한 者는 土地에 대하여 아무런 權利도 가지지 못한다. 個人이 부분적으로 占有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사망과 더불어 중단되며 社會에 復歸되는 것이다¹⁶⁾.”

그러나 미국의 시민들이 모두 상속과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세에 의한 富의 分配平等化(equ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by taxation)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社會階層은 후속세대에 의한 經濟階層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安定되어 가는 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는 經濟的인 계층의 구성원이 流動的이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수준

16) Shultz, *op. cit.*(1926), p.173에서 재인용.

의 가정은 아직도 經濟的인 階層上昇移動을 열망하고 있는바, 상속·증여과세는 특히 근면한 勞動과 貯蓄에 의해 번영이 시작되는 가정에 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相續課稅의 중요한 기능은 稅收增大보다 富의 分散이라고 하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더 무거운 比重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세제도가 어떤 構造와 強度로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態度를 가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3. 富의 不平等 生成原因

대부분의 學者들은 個人에게 富가 集中되는 原因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前世代로부터 財産을 물려받는 재산상속제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個人이 가지고 있는 經濟적 창의·재능·근면·저축심 등에 差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 主된 原因을 前者의 原因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가. 財産의 相續

Harbury와 McMahon은 富가 특정계층에 集中되는 原因에 대하여 富의 세대간 移轉이 같은 家族共同體內에서 世代間에 再分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⁷⁾. 이는 물론 世代間的 財産相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John A. Brittain은 各人의 經濟的 地位가 不平等해지는 原因을 相續에 두면서 相續을 人的 富의 相續(the inheritance of

17) Alan A. Tait, "Net Wealth, Gift, and Transfer Taxes", Sijbdrn Crossen (ed.), *Comparative Tax Studies : Essays in honor of Richard Goode* (Amsterdam :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3), p.161 ;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ow Hill, 1973), p. 338 ; 下和夫 (譯), 『マスグレイベ財政學』(東京: 有斐閣, 1983), p.597 ; John A. Brittain, *Inheritance and Inequality Status*(The Brooking Institution, 1978), p. 2.

human wealth)과 物的 富의 相續(the inheritance of material wealth)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⁸⁾.

첫째, 다음과 같은 것을 그는 人的 富의 상속으로 보고 있다.

① 부모의 연줄(parental pull)이다.

부모의 연줄은 成功이 무엇을 아느냐(what you know)보다 누구를 아느냐(whom you know)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눈에 띄게 公正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각 개인의 결승점을 향한 出發點이 된다고 할 때 현실적인 社會的·經濟的 不平等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外面的 特質(superficial characteristics)이다.

사람의 말하는 모습, 옷 입는 스타일, 예절 등을 의미하는 外面的 特質은 父母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世代間에 移轉된다. 이는 子女의 직업선택 등 進路決定과 성공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유형의 背景的 影響은 비록 子女의 成功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한 人生的 出發點이 될 수 있고, 유리한 經濟的 地位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③ 환경적 결정요인(environmental determinants)이다.

父母가 받은 높은 수준의 교육은 子女들의 成功機會에 대하여 유리하게 作用한다. 조사한 결과는 父母가 받은 교육이 자녀의 所得水準·職業에 決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父母의 子女에 대한 교육을 예시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經濟的 地位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크게 向上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不足함이 없도록 父母가 성심을 다해 돌보는 것과 幼年 訓練은 아이들의 成長·發育·發達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투자는 人的 富를 世代間에 이전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다.

4 上位階層間에서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도 不平等의 原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이다¹⁹⁾.

18) Brittain, *op. cit.*(1977), pp. 4~33 ; Brittain, *op. cit.*(1978), pp. 73~88.

둘째, 物的 富의 相續은 經濟的인 富의 直接的인 世代間 移轉이기 때문에 子女의 經濟的 地位에 直接的인 影響을 준다. 즉 부유한 가정 에 태어난 子女는 가난한 家庭에 태어난 사람보다 經濟적으로 成功할 수 있는 好機(a better chance)를 많이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富의 世代間 結合(the intergenerational association of the wealth), 즉 富의 集中問題인 것이다²⁰⁾.

그리하여 Brittain 교수는 “生涯에 있어서 各人의 成功을 위한 分투는 有利한 出發點(head-starts) 달리기와 장애물 달리기 에 비유된다” 고 하면서 物的 富의 相續이 租稅政策의 표적물로 등장하는 것은 正當하다고 한 것이다.

상속제도에 의하여 富가 어느 정도 特定階層에 集中된다고 하더라도 부유계층에 일부 構成員이 새로 참여하고, 일부 構成員이 탈락하는 그러한 사회적 계층간 流動性이 있으면 富의 편재를 용인할 수가 있다고²¹⁾ 전제하고, 상속과세는 그 社會的 流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

19) Brittain, *op. cit.* (1977), p. 2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공정자 교수의 『한국 대기업 가족의 혼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백대기업 재벌 아들의 장인 123명 중 기업계 인사가 49명(40%), 관계·정계 인사가 39명(32%)이고, 1백대기업 재벌 딸의 시아버지 82명 중에는 기업계 인사가 33명(40%), 관계·정계 등 인사가 29명(35%)이라고 한다. 아들·딸 모두 70% 이상이 지배계층 안에서 통혼하고 있는 것이다(“돈과 권력 사든 많다 -끼리끼리 혼인- 상부상조”, 『동아일보』, 1989. 10. 7, 제15면).

20) J. A. Kay and M.A. King, *The British Tax System*,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165.

오늘날의 부자는 前世代가 부자였던 사람들의 아들·딸인가? Harbury and Hitchens의 연구에 의하면 부유하게 사망한 者와 부자인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富가 집중된 상위계층에 있어서 富의 상속은 富의 분포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부자로서 사망한 자의 60%가 거액의 富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富의 보유계속성을 관찰한 것이다(C. Harburg and Hichens D.W., *Inheritance and Wealth Inequality in Britain* (London: Allen and Unwin, 1979) 참조).

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富의 集中은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一致된 見解이다. 富의 과도한 偏重은 민주주의제도 그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物的 富의 集中은, 물질 富의 크기가 비록 정치권력의 유일한 源泉은 아니지만, 權力の 集中을 수반한다. 국가의 조직기구 안에서, 예컨대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富를 배경으로 하여 巨大한 權力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富의 集中이 權力の 集中을 초래하며, 그러한 權力の 集中이 다시 經濟的 不平等의 支配要素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²¹⁾.

나. 富의 自手成就

富는 物的 富의 相續으로만 어느 개인에게 集中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타고난 創意·能力과 勤勉·節約·技術蓄積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富는 形成될 수 있다. 이것이 스스로의 努力에 의한 富의 自手成就이다. 특히 생산수단의 私的 所有를 승인하고, 그에 의해 창출한 새로운 富의 私的 所有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는 富의 自手成就의 동기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稼得한 利潤을 저축하고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收益을 再貯蓄하거나 민첩하게 투자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얻는 特別利益의 發生에 의하여 富를 축적한다²²⁾. 이러한 自手成就에 의한 富의 增加는 國富를 증가시키는 創意的 經濟活動이다. 이러한 富의 不平等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21) Tait, *op. cit.*(1983), p. 161.

22) Brittain, *op. cit.*(1977), pp. 1~2, p. 8.

부유계층의 자녀가 그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서 경주를 출발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크게 저해하며, 이와 같이 개인의 출발점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은 일생을 통해서 영속한다고 했던 것이다.

23) Brittain, *op. cit.*(1977), p. 2 ; Brittain, *op. cit.*(1978), pp. 9~10.

또한 Tait는 이렇게 자수성취한 富가 축적에 의해 상속받은 富를 향유한 계층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장애를 주는 것의 하나가 개인소득세의 무거운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다(Tait, *op. cit.*, 1983, p. 161).

市場經濟原理에 충실하면서 얻은 깨끗한 富이면, 世代間에 상속받은 富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에 대해서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이 너그러운 이해를 하게 된다.

租稅에 있어서도 상속제도에 의해 무상이전받은 橫財性 富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축적한 富를 같은 기준에서 무차별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

또한 富의 集中에 대하여 公共政策의 介入이 보다 필요한 부분은 상속에 의한 富의 集中이며 自手成就한 富의 集中에는 그 介入의 必要性이 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注目하여 상속재산을 前世代에서 이전받은 것과 自手成就한 것을 구별하고 前者에 대하여는 무겁게, 後者에 대하여는 가볍게 相續課稅를 하자는 제안이 Eugenio Rignano에 의해 제창되었던 것이다²⁴⁾.

4. 相續課稅와 富의 集中抑制 機能

가. 富의 分散政策으로서의 限界

法的인 形式論理에서만 보면, 富의 상속으로 얻는 競走에서의 유리한 出發點은 機會均等の 平等原則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 의미의 差別禁止의 法則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的 實質에서 보면 상속제도는 富의 一部階層 集中의 주된 원인이 되며, 나아가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을 노정시키고 있다. 또한 富의 集中은 權力의 集中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이상에 배치된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富는 本質에 있어서 社會的 生産價値를 所有者가 受託管理하는 것일 수도 있다²⁵⁾. 따라서 잘못된 富의 分配가 永續化됨

24) Eugenio Rignano,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Inheritance Tax*, Translated by William J. Stulz(New York: Alfred A. Knopf, 1924), p. 34 이하 ; McNulty, *op. cit.*(1983), pp. 470~471 ; Tait, Alan A., *The Taxation of Personal Wealth*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7), p. 106 이하.

으로써 富의 不均衡狀態가 固着化되고, 경제적 下位階層이 이 부유계층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다 化石化된 계층(a more fossilized set which it is difficult to join)으로 형성되어 갈 때 그 不平等에 대한 合理的 根據는 대부분 소멸해 버린다²⁵⁾. 이러한 계층의 化石化를 완화시키는 제도의 하나로서 相續課稅制度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富의 集中抑制 내지 그 分散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前述한 McGovern의 제안과 같이 沒收稅率(a confiscatory tax rate)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견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目的이 만족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財産相續權이 비록 自然權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私有財産權의 일종으로 保障된 權利인 이상 조세가 그 本質을 침해할 수 없는 限界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비추어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限界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憲 23 I·②)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도적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法的 保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民法 제15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상속권도 公共福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法律로서 제한할 수 있다(憲 37 ②). 이 경우의 公共福利은 富의 적정한 분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이 侵害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沒收稅率을 규정하는 것은 재산상속권의 核이 되는 實體인 財産의 移轉承繼權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리의 本質的 內容의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5) Pechman, *op. cit.*(1983), p. 226 ; 日本稅制調査會, 「相續稅制度改正に關する答申, 『抜本的見直についての答申 報告 審議資料總覽』, 1957.12, pp. 1142~1143.

26) Tait, *op. cit.*(1983), p. 161.

또한 상속제도는 人倫의 근간인 핏줄의 연속성을 그 매개적 要素로 하여 財産의 承繼가 되풀이되게 하는 제도이다²⁷⁾.

핏줄을 매개로 하여 生活共同體의 構成員에게 財産을 承繼시키는 것은 人間本性에 기초를 둔 제도이므로 다른 사회정책적 目的을 위해 그러한 本質을 완전하게 말살할 수 없는 면이 있다. 財産상속권이 자연권이 아니고 實定法이 승인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沒收稅率에 의한 相續課稅는 不可하다고 본다.

나. 富의 分散問題와 課稅類型의 選擇

富의 集中을 깨뜨려서 그 分散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相續課稅制度를 크게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富의 일부를 국가로 이전하여 公有化함으로써 民間部門의 富를 減少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相續課稅制度 중 財産의 分散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한 課稅類型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특히 後者는 民間部門의 蓄積된 富가 公共部門으로 移轉되는 부분을 작게 하면서(부담이 가벼움) 富의 分散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富의 分散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속과세가 그 부담자의 應能負擔과 어떻게 조화되며, 그 施行의 難易度는 어떤가 하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課稅類型의 선택문제이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課稅類型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각 類型마다 長短點이 크게 다른바, 그 선택은 큰 政府와 작은 政府, 公平을 측정하는 基準(응능부담), 富의 分散에 대한 사회적 要求의 熱度, 조세행정의 技術水準 등을 종합적으로 考慮하면서 決定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27) 村井 正, 『租稅法: 理論と政策』(東京: 青林書林, 1987), p. 309.

第3節 相續課稅의 經濟的 影響

1. 相續課稅의 歸着

상속과세에 있어서 그 부담의 귀착에 관한 문제는 稅金을 부담하는 者가 財産을 無償移轉하는 피상속인·증여자인가? 아니면 財産을 無償取得하는 相續人·受贈者인가? 그리고 負擔者가 後者라고 할 때 이들이 그 負擔을 다시 前方轉嫁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租稅歸着은 조세정의로 표현되는 公平의 理想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⁸⁾.

A. Smith는 “死亡者가 生存者에게 移轉하는 財産에 과세하는 租稅는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finally as well as immediately) 재산을 移轉받는 사람에게 귀착된다”고 했다. 또한 Bittker 교수도 相續課稅에 있어서 그 負擔의 正面에 마주서야 할 사람은 生存하고 있는 相續人·受贈者이고 사망한 被相續人·贈與者가 아님이 明白하다고 표현하고 있다²⁹⁾.

그런데 일부 견해는, 사망 직전에 相續課稅制度가 신설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그러한 조세부담을 예기하지 못한 경우라면 相續課稅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相續人·受贈人이 부담하지만, 相續課稅制度가 종전부터 계속 존재해서 被相續人이 이를 미리 예견했었다면 여러 가지 方法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도를 강구했을 것이므로 사망한 者에게 그 부담이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도란 轉嫁·歸着의 문제라기보다 조세회피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28) C. Lowell Harriss, “Source of Injustice in Death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7(Dec. 1954), p. 294.

29) Bittker and Clark, *op. cit.* (1984), p. XVIII; Harriss, *op. cit.*(1954), p. 295.

다른 견해는 상속과세의 부담을 예견했던 사망한 者가 상속세 부담이 없을 때 남기고자 했던 同額의 稅後遺産을 蓄積하기 위해 生存時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유산을 증가시켰다면 조세부담은 사망한 者가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상속인이 그가 살아 있을 때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고 여가를 희생하여 生産活動을 늘리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스스로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 부담이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착할 可能性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相續課稅의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相續稅額 상당의 감소를 메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³⁰⁾.

相續人·受贈者가 相續課稅 부담을 진다면 이들은 납부한 세금을 前方轉嫁(forward shifting)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轉嫁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다. 상속인들은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財貨나 用役의 가격을 용이하게 引上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산한 財貨나 用役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담의 고통을 받지 않는, 즉 가격인상의 강요를 받고 있지 않는 同種財貨 등의 다른 생산자들과 市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인 등은 그들이 부담한 세액을 메우기 위하여 일의 양을 더 증가시키면서 勤勉하게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租稅公表效果(tax announcement effect)에 대한 순응일 뿐이고 조세부담을 轉嫁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³¹⁾.

위와 같이 볼 때 상속과세의 부담은 A. Smith의 表現대로 相續人·受贈者에게 즉시, 그리고 최종으로 귀착되고 前方轉嫁되지 않는다고 하는 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상속과세의 부담이 전가된다고 한다면 상속과세는 富의 分散을 위한 政策手段이 될 수 없을 것

30) Harriss, *op. cit.*(1954), p. 295.

그리고 어떤 이는 이를 租稅의 轉嫁가 아니라 상속과세의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에 대한 순응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IX).

31) Bittker, *op. cit.*(1967), p. XXVIII-XXIX.

이나 그렇지 못 하다고 보면 相續課稅制度는 그러한 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2. 相續課稅와 創意的 經濟活動

사람이 사망할 때 남긴 遺産에 대하여 相續課稅하는 제도가 있으면 부유한 사람들의 創意的 經濟活動을 위축시키고 巨大한 富를 創出·蓄積하고자 하는 野望을 좌절시켜서 국민경제의 活力을 약화시킨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즉 사망할 때 남기는 재산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租稅로서 國家에 移轉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기업가는 사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은퇴해서 골프나 칠 것이며, 경제발전과 國富의 축적은 멈추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상속과세를 富의 축적동기에 대한 제동장치로 이해하고 있다³²⁾.

반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에 대하여 美國에서 조사한 결과는 富의 축적동기가 子女에게 巨額의 富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생각보다 個人의 成就感을 만족시키는 데 있음이 判明되었다고 한다³³⁾. Carnegie가 그의 '富의 복음'에서 富를 축적하는 것은 富를 축적한 데서 얻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³⁴⁾. 따라서 상속과세제도는 創意的 經濟活動에 대한 制動效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상속과세제도의 公表效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시킬 수 있는 금액만큼의 재산을 子女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상속인 등이 세액만큼 감소된 상속재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³⁵⁾. Carnegie의 持論처럼 子女에게 거대한 富를 상속해 주었을 때

32) Shultz, *op. cit.*(1926), p. 207 ; Rudick, *op. cit.*(1950), p. 159. 그러나 Rudick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33) Shultz, *op. cit.*(1926), p. 207.

34) Pechman, *op. cit.*(1983), p. 226.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V.

35)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VIII ; Carl S.Shoup, *Federal Estate and Gift Taxes*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6), p. 89.

오히려 子女의 재능과 창의를 말살시켜서 그들의 창의성 있는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비록 추측 이상의 결론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學者들이 상속과세는 기업활동이나 모험투자(venture investment)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즉 상속과세는 창의성 있는 경제활동에 제동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높은 所得課稅가 經濟的 利潤動機를 억압하는 것과 對比할 때 상속과세는 이런 관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相續課稅와 生産資本과의 關係

가. 生産資本에 미치는 影響

1) 生産資本侵害論

상속과세가 生産에 기여하고 있는 資本을 파괴한다고 보는 主張은 1924년 Andrew Mellon 재무부장관의 見解가 대표적이다³⁷⁾.

즉, 상속과세는 資本課徵(taxes upon capital)이다. 만약에 政府가 財政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산이 크든 작든 유산의 50%를 租稅로써 가져간다면,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一生 동안에 유산을 평균적으로 보아 倍加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에서는 實質的으로 資本이 고갈될 것이다. 결국에는 課稅할 資本이 없어질 것은 明白한 사실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상속과세에 대한 전통적인 反對論에 속하는 것으로서 富를 民間部門으로부터 公共部門으로 이전시키면 生産活動에 공급되는 資本이 減少해 버린다고 보는 立場이다. 즉 財産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상

36) Kurtz and Surrey, *op. cit.*(1970), p. 1367 ; Shoup, *op. cit.*(1966), p. 104 ; Shultz, *op. cit.*(1926), p. 207 ;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III iii.

37)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

속과세를 하면 비생산적인 政府의 稅入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生産的인 資本을 희생시킨다는 假定을 전제로 하면서 상속세는 所得에 歸着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資本에 歸着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속과세는 惡稅이다³⁸⁾.

이에 대하여는 근거있는 反論이 제기되고 있다. Rudick은 다음과 같은 事例를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³⁹⁾.

“Henry Ford가 사망했을 때 만약에 그의 遺産의 대부분을 면세단체에 유증하지 아니했다면, 그리고 그의 유산이 그의 포드자동차회사의 株式을 매각하지 아니하고는 遺産稅(the Estate tax)를 납부하기에 족한 流動性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은 그 株式의 일부를 매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드자동차회사는 事業을 중단하지 않고, 그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계속 생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그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을 인수해서 불특정 다수의 願買者에게 팔게 되고, 자동차회사는 새로운 株主를 단순히 맞이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産資本에는 浪費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Shultz 교수도 “국가의 資本的 富는 경작할 수 있는 농토·공장과 기계·도로·철도·댐 그리고 근로자 및 기술자가 축적하고 있는 産業技術·경영자의 企業管理 능력 등의 종합적 구성체이며, 이러한 資本的 富는 상속과세에 의하여 감소되는 일이 없다. 기계·댐·산업기술 등 그 자체에 의하여 徵稅官에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⁴⁰⁾.

Bittker 교수는 이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비판한다⁴¹⁾.

첫째, 상속과세가 生産資本에 대해 침해적인가의 여부는 政府가 相續稅 收入을 사용하는 方法과 상속인 등이 그 同一財源을 사용하는 方法을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만약에 상속인 등이

38) Shultz, *op. cit.*(1926), p. 202.

39) Rudick, *op. cit.*(1946), p. 184.

40) Shultz, *op. cit.*(1926), p. 204.

41)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p. XXX~XXXI.

상속받은 재원을 진귀한 빨담뽕요리와 삼페인을 곁들인 食事に 사용하는 데 반하여, 정부는 相續稅 收入으로 얻은 재원을 댐 건설 등에 사용한다면 相續課稅制度가 오히려 生産資本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해 주는 데에 사용하는 등 相續稅 收入을 소비에 지출해 버리는 데 반하여 相續人 등이 상속받은 재원으로 새로운 企業을 創立하는 데에 投資하게 된다면 상속과세는 生産資本의 증가를 억제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상속인 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일부(예컨대 閉鎖會社의 株式)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願買者가 그 구입재원을 어떤 源泉에서引出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구입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消費를 억제했다면 그 주식의 移轉은 상속과세로 인하여 유산이 감소된 만큼은 새로운 주주의 投資에 의해 메워진다. 따라서 생산자본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주식의 구입자가 다른 데에다 투자할 기금을 주식 구입재원으로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에 상응된 다른 투자증가가 없을 경우 相續稅 부담액만큼 遺産이 감소되고, 따라서 生産資本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한다⁴²⁾.

2) 資本家保護論

이 견해에서는 相續課稅制度를 富의 不平等을 심화시키거나 그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資本家保護裝置의 租稅라고 본다. 이는 사회주의자인 프랑스의 Achille Loria가 주장했다⁴³⁾. 資本의 蓄積이 진행되면 利潤率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D. Ricardo의 假定을 전제로 하여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즉 資本의 價値는 그것이 資本財이든 資本財에 대한 所有權이든 利潤生産力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자본의 축적에 따라 이러한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消費財에 대비해서 資本財의 價値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42) Rudick, *op. cit.*(1946), p. 184.

43) Shultz, *op. cit.*(1926), pp. 192~193에서 재인용.

이렇게 되면 자본의 축적 내지 사회발전이 資本家와 非資本家間的의 격차를 좁혀가게 된다. 이러한 발전방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相續稅를 발전시켰다. 말하자면 상속세 부담이 農業地主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상속세는 資本的 富를 정부가 흡수함으로써 資本의 利潤率을 유지시키고, 따라서 資本家階級の 社會的 優位性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은 계급투쟁이론을 상속과세제도에 牽強附會시킨 것으로서 歷史的 經驗이 이의 허구성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의 변화, 商品의 發達, 技術의 혁신 등은 資本蓄積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投資機會을 제공했으며, 상속과세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資本의 利潤率은 그 수준이 투자를 유인할 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 結 言

國民總投資(國民經濟의 生産資本)는 재산의 본래 所有者의 貯蓄 變化, 政府의 支出의 變化, 遺産을 매각한 경우 그 買入者의 支出變化, 이 세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언제나 같은 方向으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과세가 生産資本에 미친 純效果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⁴⁴⁾.

또한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정부는 국민의 소득·재산·법인의 利潤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에 의해 상속과세 폐지로 인한 稅收 감소분을 메워야 한다. 이렇게 추가징수되는 세액은 결국 상속과세와 마찬가지로 資本家에게 歸着될 수밖에 없다⁴⁵⁾.

위와 같이 볼 때 상속과세제도가 經濟發展의 기반인 生産資本을 고갈시킨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論理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4)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I.

45) Shultz, *op. cit.*(1926), p. 204.

나. 相續重課稅와 資本逃避의 問題

어떠한 租稅이든 그것이 지나치게 부담이 높으면 부유계층에 의해 資本이 海外로 逃避할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 高稅率 課稅政策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資本은 등우리 안에서만 사는 수줍은 새(shy bird)가 아니라 祖國이 없는 世界同胞主義的 鳥類(the cosmopolitan bird)이다. 그래서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안전한 곳이면 등지를 튼다”고 했다⁴⁶⁾. 이러한 表現은 現代 國際經濟에 있어서 怪物이라고 불리는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의 盛行이 立證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相續課稅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個人이 축적한 富는 그가 企業 등으로 成功한 나라의 토양에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富를 쉽게 다른 나라에다 옮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살면서 外國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속과세를 회피하고자 하여도 相續課稅制度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나라가 거의 없고, 또 相續課稅制度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가 屬人主義와 住所地主義에 의하여 全世界 所在 相續遺産에 대해 無制限 納稅義務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 회피가 어려운 것이다⁴⁷⁾. 이렇게 볼 때 財産相續에 대한 重課稅로 인하여 資本(富)이 海外로 逃避할 우려는 所得課稅의 重課稅政策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6) Shultz, *op. cit.*(1926), p. 321에서 재인용.

47) 相稅法, 2①, 日·相稅法 2①, IRC 2031(a)·2013, 西獨相稅法 2① 등 참조.

위의 모든 나라들은 屬人主義와 住所地主義에 의해 전세계 소재 유산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4. 貯蓄과 投資에 미치는 影響

가. 貯蓄에 미치는 影響

1) 貯蓄沮害論

상속과세는 그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被相續人이 될 사람 (the decedent-to-be)의 通常的인 消費를 증가시켜서 貯蓄을 상속과세 부담액 이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⁴⁸⁾.

遺産의 無償移轉을 피상속인의 消費와 같다고 보면, 사망시의 消費에는 과세하고 생존시의 通常적 消費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被相續人이 될 사람은 사망시의 消費를 생존시의 消費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지출이란 사망에 임박한 그 수년간에 있어서는 通常의 消費支出과 생전 無償移轉의 合計額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유는 生前移轉인 贈與도 通常적인 消費支出과 마찬가지로 상속과세의 부담을 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이렇게 볼 때 相續課稅는 被相續人이 될 者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貯蓄을 減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사망 전에 潛在的 遺産을 모두 소비함으로써 상속과세의 負擔을 없앨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48) Carl S. Shoup, *Federal Estate and Gift Taxes*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6), pp. 87~88.

49) 이것은 1966年 당시 미국의 증여세가 그 세율이 상속세 세율의 3/4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 세율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50) Shoup, *op. cit.*(1966), p. 87.

Groves 교수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저축의 만성적 초과공급(a chronic over-supply of savings)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케인지언(Keynesian)의 견해에 따른다고 할 때 이상적인 조세는 투자

或者는 상속과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를 消費課稅와 관련시켜서 접근하기도 한다⁵¹⁾. 즉, 표면상으로 보면 상속과세는 스스로 稼得한 富보다 상속받은 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累進課稅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所得課稅에서도 저축에 대하여 重課稅하고 상속과세에서도 貯蓄에 중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나 支出稅(expenditure tax)⁵²⁾를 도입하여 稅制 전체에서 볼 때 생존기간에 많이 소비한 者는 무거운 消費稅를 부담하고 生存時에 많이 貯蓄한 者는 무거운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構想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과세가 일방적으로 貯蓄만을 벌하는 모순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2) 貯蓄誘引論

被相續人이 될 者의 行態를 기준으로 고찰하면 상속과세가 일률적으로 저축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과세가 없을 때와 同額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될 자가 오히려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富를 더 稼得하는 努力을 倍增할

를 저해함이 없이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이러한 특수사정에(Groves, *op. cit.*, 1950, p. 30) 보다 가깝게 적합하다고 했다.

- 51) G.M. Brannon, "Death Taxes in a Structure of Progressive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26, No. 3, (Sept. 1973), p. 453.
- 52) 支出稅는 Kaldor에 의하여 1955년에 제안되었다. 이는 다시 J.E.Meade 報告書에서 그 理論을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나 현재 이 제도를 입법화해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Micholas N. Kaldor, *An Expenditure Tax*(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5)의 저서에서 지출세의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Meade Report* (1978), p. 150 이하 참조.
- 53) 높은 個人所得稅만으로도 個人이 거대한 富를 축적할 수 없으므로 상속과세제도는 時代錯誤의 殘在物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Bittker 교수는 재산의 보유로 발생하는 미실현평가증분에 대해서는 所得課稅가 이에 손을 뻗칠 수 없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 株式·不動產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한 사망할 때까지 가치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 채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巨大한 富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주장한다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 XXXI).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財産의 보유가 他人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表象과 같기 때문에 生存時에 贈與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과세상의 稅率引上 등에 대하여 消費支出의 減少·生前移轉의 抑制·저축의 增加로 대응하는 行態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면 상속과세는 오히려 저축유인의 效果를 가질 수도 있다.

相續人이 될 者(heir-to-be)의 行態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상속과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상당히 확실하고 명확한 크기의 財産을 상속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과세가 公表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기대는 세부담액만큼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들은 상속과세 부담액에 대해 어떤 變化를 일으킬 수 있는 事項을 支配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이미 부유하지 못한 限 追加所得을 얻기 위해 보다 더 勤勉하게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30代, 40代의 壯年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은 財産상속의 기대가 저해되었을 때 더 많은 所得을 얻으려고 努力할 것이고 追加所得을 저축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所得效果는 피상속인이 될 者에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祝福받는 것(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이라는 格言을 배척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相續課稅가 발생시키는 피상속인이 될 者에 대한 所得效果가 상속인이 될 者에 대한 所得效果만큼 강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⁵⁾.

나. 投資에 미치는 影響

貯蓄에 대한 租稅效果는 投資⁵⁶⁾에 대한 租稅效果의 指標와 다르다.

54) Shoup, *op. cit.*(1966), pp. 88~89.

55) Shoup, *op. cit.*(1966), pp. 97~98.

56) 투자라고 함은 국민소득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서 工場新設·設備財取得·在庫資産 購入, 그리고 外國金融資産의 取得 등을 위해 직접 지출된 것을 의

그 이유는 투자지출의 결정은 貯蓄의 意思 決定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投資者는 저축자 그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투자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하여 貯蓄과 投資에 대하여 상속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投資支出의 수준이 그 投資者 자신의 貯蓄水準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에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租稅는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資本市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閉鎖會社는 상속과세에 의해 그 成長이 抑制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상속과세가 없다면 그러한 회사의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액에 대비할 때 폐쇄회사의 투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투자의 대부분은 上場法人(公開會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投資에 의하여 稼得한 利潤이 상속과세 때문에 그 일부분이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경우 投資가 抑制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관찰된 결과는 그러한 영향이 나타난 實例는 매우 희소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上場法人에 있어서 投資決心을 하는 사람은 전문경영인이며 이들은 주주에게 相續·贈與稅(the death-gift tax)가 과세되리라는 전망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⁵⁷⁾.

다. 結 語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과세가 貯蓄과 投資에 미치는 효과는 肯定的·否定的인 양측면이 있어서 그 결론이 明白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不定期的으로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과세하는 상속과세제도는 每年 所得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반복해서 과세하는 所得課稅制度보다는 個人의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미한다(Shoup, *op. cit.*(1966), p. 93).

57) Shoup, *op. cit.*(1966), p. 93.

영향이 간접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과세가 없는 경우보다 각 개인의 創意的인 經濟活動과 富의 축적에 負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第3章 取得課稅型的 導入方案 摸索

第1節 課稅類型과 그 選擇

1. 課稅類型的 概觀과 그 評價

가. 遺産課稅型

遺産課稅型 相續稅는 사망자가 남긴 遺産總額의 移轉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무상이전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산을 무상취득하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相續分으로 分割하기 전의 분할되지 아니한 유산 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이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decedent, donor, deviser, legator or transferor base)으로 과세의 物的 單位를 산정하여 資産移轉課稅를 하는 것이다¹⁾. 과세 베이스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의 一生에 걸친 경제활동이 종결하는 때에 그의 課稅精算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課稅方法은 미국과 영국을 위시하여 영미법계의 나라에서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세유형의 상속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相法2).

유산과세형의 상속과세 방식에 대한 理論的 根據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1) 李泰魯, 『租稅法概論』, 서울: 조세통람사, 1989, p. 263.

金子宏, 『租稅法』, 第2版, 東京: 弘文堂, 1989, p. 306.

첫째, 個人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富를 축적한 것은 사회가 그의 뛰어난 經濟的 재능을 인정하고 재산의 管理·運用을 信託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그러한 경제적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에 의해 재산이 이전할 때에 상속유산의 일부는 社會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死亡은 그가 生存時에 받은 세제상의 특전, 기타 조세 회피 등에 의해 축적한 재산을 파악·과세할 수 있는 절호의 機會이며, 이때에 소득세 또는 재산세의 後拂로써 과세하려고 한다면 유산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回避租稅精算論 (back tax theory)에 의해 상속과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Musgrave 교수는 사람이 사망할 때 사회는 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고자 할 수 있으며, 사회는 개인이 生存해 있는 동안 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그의 死亡과 더불어 그러한 權利를 종료시키거나 제한하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목표를 成就하는 방법에는 美國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과세형 과세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사회가 一定量까지 遺産의 자유로운 承繼·使用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점을 설정할 것이고, 일정량의 限界를 초과하는 유산을 沒收하고자 한다면 그 한계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의 세율을 설정하게 된다고 했다³⁾.

나. 取得課稅型

取得課稅型 상속세는 受贈者(donee)·受遺者(devisee)·相續人(heir), 즉, 재산의 무상이전취득자(transferee)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無償取得者 기준으로 과세한다. 특히 상속인·受遺者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

2) 白崎淺吉, 『相續稅法解説』, 東京: 稅務研究會, 1975, pp. 3~4.

3) R.A. Musgrave and P.B. Musgrave, *op. cit.*(1973), p. 338 ; 木下和夫 (譯), 前掲書(1983), p. 597. 특히 100%의 세율 제안은 1972년 G. McGovern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바 있으나,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함은 前述하였다.

의 相續分·遺贈分 등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고 이와 같이 분할·계산된 각자의 몫(지분)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유산과세형이 유산을 각 상속인 등의 相續分으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유산총액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과 이 점에서 구별된다.

취득과세형에서는 사망한 자의 유산액의 크기는 무시되고 상속인 등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의 크기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分散移轉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의 총액은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적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富의 分散을 유인하는 機能이 遺産課稅型보다 우수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 負擔이 無償取得者에게 歸着된다고 볼 때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의 취득재산가액에 기초를 두어 누진과세하는 것은 應能負擔의 원칙에도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應能負擔의 原則에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면 이 방법은 동일한 피상속인 등 無償移轉者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몫에 한해서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누진과세할 뿐 承繼課稅型 相續稅⁴⁾의 경우처

4) Rudick, "What Alternative to the Estate and Gift Taxes?", *op. cit.*(1950), pp. 167~168. ; Bittker and Clark, *op. cit.*(1984), pp.XXXVI ; McNulty, *op. cit.* (1983), pp. 473~474 참조.

Rudick 교수는 1946년에 승계과세형 相續稅制度를 제안했고, 1950년에 다시 이를 재정비해서 發表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美國의 遺産稅(estate tax)와 贈與稅(gift tax)를 承繼稅(accession tax)로 대체한다.
- ② 그 구조는 遺産相續과 生前移轉에 의하여 금전, 기타 財産을 취득한 자에게 累進的으로 부과한다. 課稅對象이 되는 처분은 贈與者가 무상이전하는 財産의 處分이 아니고 受贈者가 무상취득하는 財産, 즉 수증자의 무상취득이며 그 무상취득재산의 價額의 크기에 따라 累進的으로 과세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첫째, 相續은 부동산 遺贈, 動産 遺贈, 또는 遺言에 의한 財産取得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贈與者는 死亡者, 즉 被相續人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受贈者는 生存者間의 受贈者, 相續人, 不動産 受遺者를 포괄하는 개념이

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無償取得한 재산을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應能負擔에 따른 과세원칙에 不充實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취득과세형이 선호되는 다른 이유로서는 無償取得者가 無償移轉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血緣關係의 遠近에 따라 과세상 구별하는 이론과 결합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아들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카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편리한 과세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의 주된 目的이 富 내지 經濟力의 集中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경우 血緣關係의 遠近에 따른 차별과세이론은 그 힘이 약화되는 것이다.

다. 課稅類型의 比較·評價

1) 遺產課稅型 相續稅

담세능력은 無償移轉者 기준(donor base)으로 측정·과세하며, 그 과세방법은 前述한 바와 같이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전 總遺產을 과세 기초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과세한다.

피상속인의 富가 1인에게 이전(單獨相續)되거나, 다수인에게 분할되어 이전(共同相續 및 遺贈)되거나 간에 유산이 부담하는 세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상속세율의 누진구조하에서의 共同相續의 경우 遺產을

다. 넷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처분은 贈與와 動產遺贈, 不動產遺贈 및 유언에 의한 財産移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다섯째, 무상취득은 증여·유증 등에 의해 금전, 기타 財産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財産의 無償取得은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Rudick 교수의 승계형 상속세 구상은 취득과세형이 동일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한 財産만을 累積課稅하는 것과 이 점에서 크게 差異를 나타낸다. 무상취득재산에 累積合算課稅하는 期間은 受贈者의 平生期間으로 한다. 이 승계형 상속세제도는 응능부담이나 富의 분산유도 기능상 가장 우수한 과세방법으로서, 제2차 대전 후 Shoup세제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일본이 잠시 채택한 바 있으나 시행상의 문제로 곧 폐지되었다.

적게 승계하거나 많이 승계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가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동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응능부담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한다. 이는 중산계층의 相續課稅 부담이 상대적으로 過重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

相續稅 세율구조가 동일하다면, 취득과세형 상속세제도하에서보다 유산과세형 상속세제도하에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분할 전 유산총액에 과세하므로 相續稅 行政이 상대적으로 쉽다.

2) 取得課稅型 相續稅

담세능력은 遺産의 無償移轉者가 아니고 유산의 無償取得者 기준 (donee base)으로 측정·과세하며, 그 과세방법은 前述한 바와 같이 共同相續의 경우에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한 후 각자의 취득유산(상속분)을 課稅基礎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과세한다.

각 상속인은 無償取得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한계세율에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遺産額이 여러 사람에게 分散承繼되면 될수록 그 遺産總額이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은 줄게 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취득과세형 상속세제도는 유산과세형 상속세제도보다 富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하다. 따라서 중산계층의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取得課稅型이 遺産課稅型에서보다는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상속세 세율구조가 동일하다면, 유산과세형 상속세제도하에서보다 취득과세형 상속세제도하에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減少하게 된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 분할되는 遺産額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각자에게 相續稅를 부과 처분해야 하고 또한 상속인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취득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告知하고 徵收해야 하기 때문에 稅務行政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稅源을 逸失할 우려가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選擇基準과 課稅類型과의 關係

가. 應能負擔 基準

재산의 無償移轉에 과세하는 상속과세의 과세물건이 移轉者의 저축 내지 死亡直前의 富라고 보고, 이에 과세한 세액이 移轉者 또는 이전 되는 財産 그 자체에 귀착한다고 인식한다면 유산과세형이 應能부담에 적합한 과세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담세능력을 移轉者 基準으로 파악하는 것이다(the donor based principle).

生前移轉의 경우는 移轉者를 기준으로 담세능력을 파악하고 그에게 부담이 귀착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는 그러한 論理가 부적당하다. 왜냐하면 移轉者는 이미 權利能力(인격)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과세를 動的 財産稅로 이해하면서 移轉되는 그 재산 자체에 상속과세 부담이 귀착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課稅對象이 되고 있는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權利主體인 것이며, 그 재산 자체가 조세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재산을 취득하는 者의 경제적 이익이 減少됨을 뜻하게 된다.

遺産課稅型的 미국 연방유산세의 경우 遺産에 加算하는 贈與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세액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⁵⁾, 그리고 영국 상속세의 경우 生前移轉에 있어서 증여자가 부담한 상속세를 증여가액에 가산하는 것(gross-up)⁶⁾은 그 부담을 無償取得者가 부담함을 인정하는 규정들이다. 이렇게 볼 때 移轉者 基準으로 담세능력을 측정하고 상속과세 부담이 移轉者 내지 移轉하는 재산 그 자체에 歸着한다는 假說을 전제로 하는 遺産課稅型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遺産課稅型은 應能부담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5) IRC. sec. 2035(c) 참조.

6) McCutcheon, *op. cit.*(1988), p. 139.

상속과세의 부담이 無償取得者에게 귀착한다고 하면 取得課稅型은 無償取得하는 재산가액과 조세부담액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사망에 의해 유산이 여러 사람에게 分割相續된다고 할 때 각 상속인은 그가 취득한 遺産額에 기초를 두고 초과누진구조의 限界稅率을 적용받게 된다(the donee based principle).

각자의 취득재산가액이 다르면 적용되는 限界稅率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擔稅能力을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測定하여 부담을 지우는 원리인 것이다⁷⁾. 만약에 상속과세 부담이 무상취득자의 부담으로 歸着된다고 전제하면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면, 이전자 기준의 總遺産額에 초과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가액의 比率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遺産을 많이 취득하는 相續人이나 적게 취득하는 相續人이나 같은 높이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는 옹능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不公平하다⁸⁾. 이와 같이 볼 때 취득과세형은 유산과세형에 비하여 보다 擔稅能力과 밀접하게 관련·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나. 富의 分散 基準

유산과세형은 無償移轉者의 총유산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分割해서 증여·상속을 하거나, 한 사람에게 전체 유산을 증여·상속하거나 간에 총부담세액은 같게 된다. 즉 유산과세형은 富의 分散誘引에 대해 조세부담이 中立的인 것이다. 따라서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없다.

그런데 유산과세형은 세율구조가 同一한 限 취득과세형이나 승계과세형에 비해 누진도의 實效性이 높기 때문에 세율구조를 높게 하면 巨富의 축적을 과세수단으로 파괴하는 데는 주효할 것이다. 이는 民

7) *The OECD Report*(1979), p. 61.

8) Shultz, *op. cit.*(1926), p. 220.

富가 상속될 때 그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그러한 정책이 될 것이다.

취득과세형은 특히 共同相續人이나 分割贈與의 경우에 각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富를 여러 사람에게 分割하여 移轉하면 移轉할수록 상속과세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無償移轉者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富를 광범위하게 分散시킬 것이다. 즉 富의 分散誘引機能 이 있다⁹⁾. 물론 이러한 節稅上의 고려가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봉쇄할 수 없는 限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⁰⁾.

이 경우에 富의 分散은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公共部門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아니고, 상속과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부담시키면서 民間部門 안에서의 소유권 分散을 유도하는 과세정책인 것이다.

다. 家族共同體의 物的 基礎 保護基準

적정한 상속과세가 富의 분산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회제도 중에서 최상의 기초공동체인 家庭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속과세에 있어서는 가정의 物的 基礎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상속과세의 유형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유산과세형에서도 基礎控除·配偶者控除 등을 충분한 금액 수준으로 설정하고 住宅相續控除 같은 것을 위의 두 가지 공제 등과 별도로 現實에 맞게 설정한다면,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산과세형에서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면 그것은 移轉者 基

9) Bittker & Clark, *op. cit.*(1984), pp. XXXII~III.

Shultz, *op. cit.*(1926), p. 220.

10) *The OECD Report*(1979), p. 62.

準에서 그의 총유산액으로부터 그러한 공제액을 차감계산하기 때문에 특히 共同相續의 경우 그 공제효과가 귀속자가 불분명할 수 있다. 즉 공제효과가 간접적인 것이다. 반면 취득과세형에서 가족공동체의 物的 基礎를 보호하는 장치를 설정한다면 각자가 取得하는 각 持分에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각종 공제액을 각각 차감하게 되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이 분명해질 것이다. 즉, 공제효과가 직접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取得者 기준으로 相續課稅하는 取得課稅型이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라. 稅收와 稅務行政 基準

稅收寄與도와 課稅類型과의 관계는 稅率의 높이와 누진구조가 동일하면 유산과세형이 취득과세형에 비해 稅收生産能力(the revenue-producing ability)이 더 크다는 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다. 그것은 分割前 유산총액에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취득과세형에 있어서도 유산총액을 1인의 상속인이 單獨相續을 한다면 遺産課稅型과 같은 금액의 稅收가 들어올 것이다.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遺産課稅型에 비해 稅收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득과세형의 세율이 반드시 遺産課稅型의 세율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보다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租稅負擔의 水準은 바꾸지 않고, 다만 조세부담의 配分만을 바꾸어 應능부담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富의 광범위한 分散에는 節稅效果가 있기 때문에 유산과세형보다 稅收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과세유형과 조세행정의 難易度는 다음과 같다.

11) Shultz, *op. cit.*(1926), pp. 214~215; 北野弘久, 前掲書(1974), p. 4; *The OECD Report*(1979), p. 60. OECD보고서는 유산과세형을 'a better revenue yielder'라고 표현하고 있다.

첫째, 遺産課稅型은 세무행정이 간편하다는 데 異論이 없다. 세무관서는 피상속인 한 사람의 상속세신고서를 調査·確認하면 되며, 관할 과세관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하나로足하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증자, 수유자의 數, 遺産의 分割持分 여하에 관계 없이 조세 총부담액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유산의 僞裝分割申告가 거의 없게 되고 설사 위장분할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상속과세 부담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 課稅類型의 가장 큰 長點이다. 避稅現象이 두드러진 나라들이 이 과세유형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장점 때문인 것이다.

둘째, 취득과세형에서는 세무관서가 공동상속인·受贈人·受遺者の 數만큼의 상속세신고서를 조사·확인해야 하며, 관할 과세관청도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 등의 주소가 모두 관할 세무서를 달리 하는 곳에 소재하면 그 數만큼 관할 과세관청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相續開始地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데도 불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 등의 數가 많아서 相續分이 細分割되면 될수록 총조세부담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산의 僞裝分割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유산 위장분할의 폐단은 일본이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때 심각하게 경험한 先例가 있다¹²⁾. 이렇게 유산을 위장분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상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에 큰 부담을 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租稅理論上 應能負擔과 富의 分散目的에 적합한 취득과세유형은 유산과세형에 비해 조세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日本에서는 특히 養子結緣의 數가 급증했다. 그것은 위장으로 유산을 分割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다(相續稅 改革의 視點, 1987, p. 232 이하; 村井 正, 前掲書(1987), p. 318 이하 참조).

마. 結言 : 우리에게 맞는 課稅類型

우리나라의 相續稅法은 1950年 制定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1993.1 현재) 제2조 제1항은 移轉者 基準의 유산과세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제정 당시의 농업중심의 경제에서 현재의 産業中心의 경제로 크게 전환했다. 따라서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再評價가 필요한 時點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稅收寄與度와 조세행정의 難易度만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유산과세형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모두 행정편의성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런데 과세평가(특히 건물의 과세평가)·金融資產實名制·不動產의 權利得喪에 대한 公示制度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포기한 상태에서 조세행정의 稅源捕捉 努力마저 부족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가장 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수기여도가 높아질 수 없다. 그것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비중이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다음 조세행정의 難易度에서 보면 일본이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던 당시의 社會環境보다 현재의 우리 사회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租稅行政의 水準도 그늘진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행정경력이 15년에 가깝고, 부가가치에 대한 행정경력이 12년에 달한다. 상속세신고는 상속세가 연간 1,200여 건, 증여세가 연간 3만 2,000여 건에 불과하다. 물론 과세관청의 調査密度에 있어서 다른 稅目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상의 문제를 과세유형 전환에서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특히 과세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電算組織을 광범위하게 活用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현대의 租稅機能은 오로지 稅收機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租稅가 가지고 있는 부차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데 異議를 제기

하는 사람은 없다. 종합소득과세제도가 所得再分配機能에, 양도소득세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에,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地方稅로서의 응익부담의 논리를 넘어서 土地過多保有抑制에 더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상속과세제도는 응능부담에 충실하면서도 富의 일부계층 集中을 抑制하는 데에 그 기능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일치된 의견이다. 비록 稅收 寄與度가 낮다고 하더라도 相續課稅는 이 기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어떤 과세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응능부담과 富의 분산기능이라는 租稅論理의 관점에서는 취득과세형이 보다 우수하다. 그런데 그 채택에는 現實的 制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Harris 교수는 “課稅上 公正(justice, equity, fairness)이란 계속성과 점진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큰 變化, 돌연한 中止, 현저한 不繼續性(big changes, big breaks, large discontinuities)은 不公正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했다¹³⁾.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은 그러한 정도의 큰 변화 내지 현저한 불계속성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取得課稅型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租稅回避手段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偽裝分割이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租稅行政能力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장분할된 사실을 모두 摘出할 수는 없고, 국민의 건전한 納稅道義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納稅道義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는 取得課稅의 이러한 폐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일본이 考案해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¹⁴⁾의 채택으로써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13) Harriss, *op. cit.*(1954), p. 291.

14)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後述한다.

第2節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¹⁵⁾

1. 相續稅 基本構造의 設計

가. 納稅義務者와 連帶納付

1) 納稅義務者

가) 本來의 納稅義務者

다음의 財産取得者를 상속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과세유형에서나 같다.

- ① 상속·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 ② 死因贈與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나) 擬制 納稅義務者

법인격이 없는 社團·財團과 비영리법인은 개인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1) 법인격이 없는 社團·財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이 遺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은 개인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遺言에 의한 재산출연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도 같다.

15) OECD,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Paris: OECD, 1988, p. 78.

OECD 가맹국 중 1986년 현재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고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이다.

(2) 非營利法人

營利法人을 제외한 非營利法人은 受遺財産과 死因受贈財産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한다. 이는 현행법과 다를 것이 없다. 공익법인도 受遺財産과 死因受贈財産 등 公益出捐을 받은 재산(상속인의 신고기한 내 公益出捐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상법 8의2 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러한 사유로 취득하는 재산이 公益出捐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출연재산의 事後管理 과정에서 공익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公益法人으로부터 贈與稅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이 경우 事後管理는 現行制度에 준하여 그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遺贈한 경우 그 遺贈에 의하여 遺贈者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때에는 그 公益法人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遺贈者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상속세 등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라고 함은 遺贈財産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相續人 또는 그 親族에게 歸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相法 8의 2 ① 단서 참조).

2) 相續稅의 連帶納付責任

취득과세형 상속세에 있어서는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 死因受贈者 또는 受遺者가 그의 취득재산을 限度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산의 僞裝分割方法으로 어떤 상속자가 무자력상태이면서 그에게 많은 상속세 부담을 지우고 후에 缺損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장분할을 적출하여 실질적인 遺産分割을 확인·과세해야 할 것이나 조세행정력에 그 적출·확인 의 모든 책

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相續人과 死因受贈者 및 受遺者는 그가 취득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모두가 상호 連帶納付責任을 지게 할 필요가 있으나 連帶納稅義務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 이유는 상속세가 人稅에 속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공제받는 인적공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納稅義務者가 상속세를 滯納한 경우에만 지우는 連帶納付責任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규정방법은 현행 相續稅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納稅地와 管轄

相續稅의 納稅地는 상속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즉, 상속세의 告知處分은 상속인 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상속인과 사인수증자 및 수유자가 連署하여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속세 稅務調査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주관하되, 共同相續人·死因受贈者 또는 受遺者 중 피상속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조사협력을 받는 것으로 한다¹⁶⁾. 이 협력이 특히 필요한

16)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상속세의 납세지는 상속인의 주소지이고(日·相法 62), 상속인의 상속세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日·相法 27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부칙의 규정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의 주소가 이 법률의 시행지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에 관련된 납세지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

것은 共同相續人, 死因受贈者, 受遺者 등이 相續開始前 10년내(증여 유산에의 누적합산기간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受贈額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앞으로 그 상속인 등에게 상속세 조세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協力義務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조사된 내용은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각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다. 課稅物件과 非課稅 財産

1) 相續財産의 範圍

相續財産의 範圍는 現行 相續稅法과 마찬가지로 本來의 상속재산과 擬制된 相續財産으로 하며, 그 규정의 내용은 現行 相續稅法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특히 상속세 회피에 대하여 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相續稅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의 규정은 취득과세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機能이 遂行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2) 非課稅財産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遺産의 範圍는 現行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비과세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公益出捐財産으로 상속세가 비과세된 것은 그 事後管理를 하는 장치를 現行 수준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事後管理方法은 現行 상속세법의 규정을 보완하면 된다. 상속세

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주소지로 한다. 단, 당해 납세지의 소관 세무서장이 행한 당해 상속세에 관계되는 處分은 그 자의 주소지의 소관 세무서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그 事後管理에 관한 규정은 後述하는 증여세에도 準用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그것도 현행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라. 課稅價額과 課稅標準의 算定

1) 相續人 등 各者의 實地課稅價額 算定

가) 累積合算受贈財産價額의 加算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중에서 相續人·受遺者·死因受贈者 각자가 유산분할에 의하여 실지로 취득한 ‘相續財産價額’을 산정한다. 이에 는 비과세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상속유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累積合算受贈價額’을 가산하여 각 상속인 등의 ‘總取得財産價額’을 산정하는데 누적 합산수증가액에는 비과세 수증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취득재산에 가산하는 受贈財産價額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당시의 가액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개시 당시의 時價로 다시 評價한 價額에 의할 것인가? 상속개시전 8년 내지 9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증여된 재산을 다시 상속개시 시점의 時價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동안에 당해 재산이 滅失되었을 수도 있고, 양도되어 受贈者의 管理支配下에 없을 수도 있으며, 수증자가 그 재산에 많은 금액의 자본적 지출을 하여 그 價値가 크게 變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도 모두 증여 당시의 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고 있다.

증여세 課稅價額으로 加算하여 課稅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소위 과세평가상의 價額凍結效果가 발생하여 贈與를 節稅手段으로 이용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課稅行政이 간편하다는 점과 다시 평가하는 데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美國이나 日本의 立法例를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나) 債務 등 控除

위와 같이 산정한 각 상속인 등의 '相續財産價額'(累積合算受贈價額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 등이 被相續人의 債務 繼承한 채무액, 각 상속인 등이 부담한 葬禮費用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하여 각 상속인 등의 '相續稅 實地課稅價額'을 산정한다. 즉, 채무 등의 공제는 '累積合算受贈價額'에서는 공제할 수 없게 한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 累積合算受贈價額을 가산하는 것은 생전의 分割贈與를 통하여 재산을 동일인에게 여러번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相續稅의 높은 한계세율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각 相續人 등이 승계한 채무액 등이 '相續財産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累積合算受贈價額'만이 그의 '相續稅 課稅價額'이 될 것이다.

2) 相續稅 課稅標準金額의 計算

가) 相續稅 實地課稅價額 合計額의 計算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상속인 등의 '相續稅 實地課稅價額'을 합계하여 '相續稅 實地課稅價額 合計額'을 산정한다. 이는 상속재산의 위장 분할에 의한 상속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法定相續分課稅方法'에 있어서 적정한 세액을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나) 각 相續人 등의 法定相續分課稅價額 計算

위에서 본 방법으로 '相續稅 實地課稅價額 合計額'에서 사인증여가액·단순유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민법에 규정된 상속분(相續持分)에 따라 각 法定相續人이 취득할 '法定相續分課稅價額'을 산정한다. 法定相續人에는 養子와 包括受遺者¹⁷⁾(단순수유자는 제외)가 포함되며,

17) 포괄수유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의 수유재산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相續을 포기한 상속자는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하고, 代襲相續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받을 자의 수와 관계 없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따라서 단순수유자, 수증자의 경우에는 실지과세가액은 있지만 유산의 위장분할에 의하여 相續稅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法定相續分課稅方法'에서 法定相續分課稅價額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다) 각 상속인의 課稅標準 計算

위에서 본 각 상속인의 法定相續分課稅價額에서 각 상속인에 해당되는 상속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여 '法定相續分課稅標準'을 산정한다.

즉, 각 상속인의 法定相續分課稅價額에서 상속인 각자의 상속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한 잔액이 각 상속인의 課稅標準金額이 된다. 즉, 이 금액이 초과누진구조를 취하는 상속세 稅率의 被乘數가 될 것이다.

라) 相續 人的 控除¹⁸⁾

18)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各種의 控除金額은 너무 파격적으로 높은 금액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분석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시하는 금액수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시키는 입법과정에서는 그 控除金額의 適正水準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금융실명거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정착시킨다면 금융자산의 상속과세 포착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베이스가 더 넓어지고, 또한 부동산 중 토지의 과세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과세 평가액이 시가의 80% 수준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공제금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上向調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적절한 공제수준의 금액은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며, 配偶者相續控除는 배우자가 재산축적에 공헌한 정도와 노후생활이 궁핍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相續課稅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높은 세율구조, 적은 금액의 각종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국민이 준수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의 세율, 중산계층의 생활기반에 지나친 충격을 가하지 않는 각종의 공제금액을 설정하면서 상속과세 세목의 성실한 신고유도, 탈루의 최소화, 숨은 稅源의 적출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1) 相續者基礎控除

相續者基礎控除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상속을 받는 法定相續人 1인당 약 2억원 수준의 금액으로 한다. 단순수유자와 수증자가 상속자기초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유산의 일정비율을 유증받는 자인 包括受遺者에게도 이 상속자기초공제를 인정할 것인가? 포괄수유자가 法定相續人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相續者基礎控除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포괄수유자가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不許하는 것으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相續者基礎控除額’은 각 상속인의 ‘法定相續分課稅價額’에서 각각 이를 공제하여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항목이 되고 동시에 각 상속인의 ‘相續稅 實地課稅價額’에서도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 총액을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 相續者基礎控除額은 일본과 같이 定額基礎控除와 法定相續人 比例控除로 나누어 설정할 수도 있고 法定相續人 比例控除 한 가지만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 기준 정액기초공제액은 4,800만엔, 법정상속자 비례공제액은 1인당 950만엔이며 이 양자를 합제한 금액을 基礎控除額으로 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法定相續人 1인당 2억원 정도의 상속자기초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2억원 정도의 금액은 너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과세강화가 中産層 가족공동체의 物的 基礎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현행 상속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각종 物的控除(주택상속공제·농지상속공제 등)를 없애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金融實名制의 전면실시를 예상한다면 이 금액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相續人이 被相續人으로부터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을 때 공제받은 人的控除額(증여공제액)이 있고, 그 수증가액이 10년의 누적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은 相續者基礎控

除額에서 차감한 殘額을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구조로 設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의 통합(稅率一本主義)을 전제로 하는 제도에서 모색해야 하는 방법이다.

(2) 여러 가지 인적공제

(가) 配偶者相續控除

相續人이 配偶者인 경우 配偶者相續控除로서 혼인생활기간과 관계 없는 ‘配偶者相續基礎控除’와 혼인생활기간이 長期일수록 그 공제액이 많아지는 ‘配偶者相續婚姻控除’를 둔다.

配偶者相續控除의 구체적 모색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뒤에서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나) 未成年者相續控除

相續人이 未成年者인 경우 1년간의 공제금액에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年 5백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이 금액은 그 未成年者의 教育費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의 立法例에서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아직 학업중인 경우에는 그 공제하는 年限을 연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대학졸업에 필요한 연령까지 이를 연장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연령은 22세 내지 23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障礙者相續控除

相續人이 障礙者인 경우 1년간의 控除金額에 상속개시일로부터 통계상 平均壽命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장애자가 동시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障礙者控除는 그의 치료비가 그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마. 具體的 計算例

<說例>

- 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50억원
 피상속인의 채무액 13억원
- ② 유산취득자
 아들(성년)
 딸(15세:성년까지 5년)
 아내(혼인기간 40년) (단, 상속포기자 없음.)
 수유자(법정상속인이 아닌 단순수유자임)
- ③ 유산취득상황

(單位:천원)

유 산 취 득 자	아 들	딸	아 내	수 유 자
취득한 유산액	1,500,000	1,000,000	2,000,000	500,000
수증재산(10년내)	700,000	300,000	-	-
승계채무액 등	800,000	300,000	200,000	-

註 : 10년내 수증재산은 모두 相續開始 直前年度에 있었음.

- ④ 각종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 ㉠ 相續基礎控除額은 法定相續人 1인당 2억원으로 가정한다.
 - ㉡ 配偶者相續控除는 배우자상속기초공제액 2억원,
 배우자상속혼인공제액은
 혼인기간 10년까지는 年 1천만원,
 혼인기간 10년 초과 20년까지는 年 2천만원,
 혼인기간 20년 초과 30년까지는 年 3천만원으로 하되
 그 공제한도액은 6억원으로 가정한다.
 - ㉢ 미성년자공제는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年 5백만원으로 가정한다.

<각 상속인 등의 실지과세가액 계산>

<表 III-1> 實地課稅價額 算定表

(單位:천원)

유산취득자	아 들	딸	아 내	수 유 자	계
상속유산가액	1,500,000	1,000,000	2,000,000	500,000	5,000,000
누적합산수증액	700,000	300,000	-	-	1,000,000
총취득재산가액	2,200,000	1,300,000	2,000,000	500,000	6,000,000
채무 등 공제액	800,000	300,000	200,000	-	1,300,000
실지과세가액	1,400,000	1,000,000	1,800,000	500,000	4,700,000

<실지과세가액 합계액 (단위 : 천원)>

實地課稅價額	아들 분	1,400,000	
	딸 분	1,000,000	
	아내 분	1,800,000	
	수유자분	500,000	
	합계액	4,700,000	
	수유자분	500,000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함)
	잔 액	4,200,000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과세표준 계산>

<表 III-2> 各 相續人別 法定相續分 課稅標準 計算表

(單位:천원, %)

각 상속인	아 들	딸	아 내	수 유 자
법정상속분비율	100	100	150	-
법정상속분과세가액	1,200,000	1,200,000	1,800,000	500,000
상속자기초공제	160,000	160,000	2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기 초 공 제	-	-	200,000	-
혼 인 공 제	-		600,000	-
미 성 년 자 공 제	-	25,000	-	-
법정상속분 과세표준	1,040,000	1,015,000	800,000	500,000

註 : 아들과 딸의 상속자기초공제가 1억 6천만원인 것은 2억원 중 10년내 수 증재산에서 증여공제로서 이미 4천만원씩을 공제했기 때문에 이를 상계 한 것임.

<각 상속인의 실지취득분 과세표준계산>

<表 III-3> 各 相續人의 實地取得分 課稅標準 計算表

(單位:천원)

	아 들	딸	아 내	계
실 지 과 세 가 액	1,400,000	1,000,000	1,800,000	4,200,000
상속자기초공제	160,000	160,000	200,000	520,000
배우자상속공제				
기 초 공 제	-	-	200,000	200,000
혼 인 공 제	-	-	600,000	600,000
미 성 년 자 공 제	-	25,000	-	25,000
실지취득분 과세표준	1,240,000	815,000	800,000	2,855,000

바. 증여액의 相續財産에의 累積合算期間

相續人·死因受贈者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 또는 遺贈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누적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상속개시전 10년간의 누적수증액 합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에 한한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로부터 받은 受贈財産을 그의 사망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누적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된다.

2. 贈與稅 基本構造의 設計

가. 序言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의 特徵은 사망유산에 대한 과세에서는 遺産課稅型을 채택하면서도 생전이전인 증여에 대한 과세에서는 取得課稅型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가 混合型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贈與稅의 본질이 상속세의 補完稅이므로 우리나라의 贈與稅는 이론상 피상속인 기준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¹⁹⁾, 다른 한편으로는 취득자 기준의 應能負擔課稅에 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런대로 應能負擔에 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미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

19) 그 補完機能의 不充分性은 증여와 증여간의 누적합산과세기간과 증여의 유산으로의 누적합산이 짧고 납세의무자가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그 보완기능의 부족을 현행제도는 증여에 관련되는 각종 공제액을 비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세율은 명목세율을 상속세의 세율보다 5%포인트 높게 설정하면서도 최고명목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계급 금액을 상속세 금액의 반액으로 설정하여 그 累進度를 매우 급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에 상속과세유형을 취득과세유형으로 轉換·整備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증여세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나. 納稅義務者와 連帶納付責任

贈與稅 納稅義務者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주소지의 국내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無制限納稅義務者와 制限納稅義務者로 구분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 ① 贈與(사인증여는 제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個人.
- ② 法人格 없는 社團과 財團 등.
- ③ 非營利法人.

다만, 非營利法人의 수증재산이 공익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公益法人에 대하여 贈與稅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사후 관리에서 그렇게 취득한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贈與稅를 追徵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相續稅 納稅義務에서 본 것과 그 원리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증여세 관련 제규정이 거의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도 連帶納付責任을 지도록 해야 한다. 연대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연대납부책임만을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는 부적절하고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같은 연대납부책임²⁰⁾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20) 連帶納付責任에 관한 우리나라 判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贈與稅에 대하여 連帶하여 納付할 책임이 있다. 편집자 주) 소정의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별개의 것이므로, 수증자인 권증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세를 과세원인으로 보

그 이유는 相續稅에서 본 바와 같다.

다. 贈與稅 課稅財産과 非課稅財産

1) 課稅財産

가) 본래의 贈與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이 본래의 미의 증여받은 재산(수증재산)이다. 死因贈與契約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도 본래는 贈與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이지만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贈與稅 課稅財産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現行法과 다를 것이 없다.

나) 擬制贈與

취득과세형 증여세로 전환함에 있어서 現행 贈與擬制規程은 그대로 贈與擬制의 범위를 설정하는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現行法이 이미 증여세를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非課稅贈與財産

現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課稅價額에의 不算入)을 그대로 활용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첫째, 法人으로부터 받은 贈與財産.

법인으로부터 受贈한 재산이 공익출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

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獨立된 別個의 處分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92.2.8, 92누4383, 『법원공보』, 1992.11.1(제931호), 2915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 책임이라 할 것이며...』(대판, 1992.2.25, 91누12813, 『법원공보』, 1992.4.15(제9185호), 1201면).

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受贈者가 개인인 경우에는 所得稅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과세하고, 그 受贈者가 非營利法人이거나 法人稅法上 法人으로 취급되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인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가액을 법인의 收益事業 所得에 해당되도록 하여 法人稅를 課稅하는 구조를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종교·자산·학술·기타 公益事業을 행하는 者가 贈與에 의하여 취득하여 그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재산.

이에 대한 事後管理가 필요하게 되는바, 그 節次와 追徵基準은 相續財産 중 公益出捐에 의한 비과세 재산에 관한 事後管理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된다.

라. 課稅期間과 年間控除

1) 課稅期間

현행 증여세는 期間課稅가 아니고 贈與가 있을 때마다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에 數回의 贈與를 받은 경우에는 그 回數에 상응하는 贈與稅申告와 賦課處分을 해야 한다. 이는 行政力의 낭비인 동시에 納稅者에게도 불편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유산과세형 또는 취득과세형 여부를 불문하고 先進稅制에서는 증여세를 1년 과세의 시간적 단위로 하는 期間稅로 하고 있다. 우리도 증여세를 1년을 課稅期間으로 하는 期間稅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年間控除

贈與稅를 과세기간 1년의 期間稅로 하는 경우 '年間控除額' 制度를 두어야 하는데 1년간의 課稅最低限金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금액수준은 과세행정능력이 追及할 만한 規模의 금액을 고려하면서 아울러 社會通念 내지 우리의 生活慣習에 비추어 贈與稅를 課稅하는 것이 국민감정상 적절한 금액수준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크리스마스선물·생일선물·입학선물·졸업선물 등 연간 합계액이 과세권에서 벗어나는 데 적합한 금액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연간 受贈財産의 합계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그 超過額만을 課稅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受贈財産合計額 전액을 課稅受贈財産價額으로 하도록 한다.

年間控除額의 수준은 300만원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贈與人的控除

1) 配偶者 贈與控除

配偶者 贈與控除制度를 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 현행 제도의 '100만원×結婚年數+1,500만원'은 그 공제금액이 너무 過少하다. 영국이나 미국은 배우자간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간의 증여로서 贈與財産 중에 居住用 不動産 또는 居住用 不動産의 취득에 充當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60만엔의 기초공제 외에 2,000만엔을 配偶者控除로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제도 현실화방안은 '配偶者 贈與控除額'을 '2,000만원×婚姻期間'과 같이 산정하되 그 最低金額을 4,000만원, 그 最高限度金額을 2억원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이 너무 過多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配偶者間 財産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贈與稅를 課稅하지 않는 법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夫婦는 하나의 生活共同體이고 결혼 후 증가된 재산은 그 본질에 있어서 夫婦共同財産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控除金額도 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兩性平等의 原則에 충족하게 조화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贈與間 累積合算課稅期間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세·증여세의 稅率一本主義 構造下에서는, 비록 累積合算課稅期間 10년 내이기는 하지만, 相續課稅를 할 때 공제하는 配偶

者控除額에서 이미 贈與課稅에서 공제받은 配偶者 贈與控除額은 이를 차감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그 控除金額이 그렇게 過多한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直系尊卑屬 贈與控除

直系尊卑屬間에 贈與를 하는 경우에는 受贈者 기준 1인당 4,000만원의 '直系尊卑屬 贈與控除'를 하도록 한다. 이는 사실상 10년간에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연간기준으로는 400만원인 셈이다. 그리고 수증 재산에 대하여 直系尊卑屬 贈與控除를 받은 者가 同一人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相續者 基礎控除額 2억원에서 이 既控除額을 차감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수준의 금액이 過多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其他 受贈者

直系尊卑屬 외의 親族間에 贈與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인정하면 재산가들이 節稅를 위해 그러한 친족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自意에 의한 富의 分散이 促進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 감소만을 목적으로 한 偽裝贈與를 과세관청의 행정력으로 索出·確認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初期에는 直系尊卑屬 외의 親族間의 贈與에 대하여는 아무런 控除도 하지 않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 課稅標準의 算定

① 1년간 同一人으로부터 받은 贈與財產價額(수증재산가액)을 合算한다. 증여재산액에는 비과세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본래의 贈與財產價額과 擬制贈與價額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②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被相續人으로부터 그 相續開始日이 속하는 年度中에 수증한 贈與財產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와 부과처분을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受贈財產은 상속으

로 취득한 재산에 합산하여 一括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年間 受贈財産의 합계액에 그 수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開始日 前 10년 내에 同一人으로부터 수증한 累積合算額을 加算하여 ‘受贈財産 合計額’을 산정한다.

④ 受贈財産 合計額에서 해당 贈與人的控除를 하여 贈與稅 課稅標準을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後述하는 統合稅率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된다.

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既課稅 贈與稅額’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既課稅 贈與稅額은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사. 贈與와 贈與의 累積合算課稅期間

贈與와 贈與의 累積合算課稅期間은 10년으로 한다. 전산조직의 완비와 상속과세 행정력의 배양에 비례하여 이 累積合算課稅期間을 점차 연장한다. 이 기간의 연장은 소액으로 分轄贈與하는 방법에 의하여 相續課稅 負擔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 贈與稅申告

贈與稅 課稅標準은 贈與稅 課稅期間 종료 후 익년 5월 31일까지 所得稅申告와 함께 受贈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課稅標準과 稅額을 신고하게 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신고도 이때 할 수 있게 한다.

稅收의 逸失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증여세의 豫定申告納付義務를 納稅者에게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贈與稅와 相續稅의 統合 및 稅率

가. 贈與課稅의 目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無償移轉하면 그에 대하여 贈與稅를 과세한다. 이러한 贈與課稅制度는 “그 재산의 贈與가 없었더라면 증여자가 사망할 때 相續遺産을 구성하게 되어 그가 납부하게 될 상속세 부담에 상당하는 稅金額을 미리 부과하기 위한 租稅設計”²¹⁾이다. 즉, 贈與課稅는 贈與에 의한 租稅回避로부터 相續課稅를 보호·보완하는 課稅制度인 것이다.

첫째, 贈與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과세보다 낮은 稅率로 과세하면 많은 富를 蓄積한 사람은 生前移轉에 의해 상속과세의 부담을 완전하게 빠져나가거나 상속과세상 초과누진구조의 높은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둘째, 증여자가 개인소득세상 높은 限界稅率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에 生前移轉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低率課稅를 하면 증여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財産(income-producing property)을 개인소득세 세율의 낮은 限界稅率을 적용받을 수 있는 受贈者에게 無償移轉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증여과세는 소득과세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²²⁾.

生前移轉에 대하여 적정하게 증여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避稅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B. D. Bernheim 교수는 그러한 避稅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한다.

“부모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장래성이 있는 投資에 관한 가치있는 情報를 제공하고 助言할 수 있다. 부모는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거래를 찾아내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며 子女를 共同投資

21) Eisenstein, *op. cit.*(1946), p. 172.

22) Rudick, *op. cit.*(1950), p. 152 ; Rudick, *op. cit.*(1946), p. 188.

者로 끌어들인다. 만약에 子女에게 필요한 자본이 없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資本을 貸出해 준다. 이러한 貸出이 정상적인 利子率을 약정하여 실지로 利子를 받는다면 正當去來가 되기 때문에 비록 그 자녀가 독자적으로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대출을 받을 能力이 없다고 하더라도 贈與稅는 課稅되지 않는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유리한 利子率로 제3자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도록 保證을 서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의 위험이 전혀 없게 된다. 그리고 부모는 共同投資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녀로 하여금 保險에 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제적 利益의 移轉에 대하여는 贈與課稅制度의 기능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증여과세제도의 設計는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나. 贈與課稅의 統合方法

1) 相續課稅와의 關係 設定

유산과세형에 증여과세와 상속과세를 統合하는 경우에는 無償移轉者 基準(transferor or donor basis)으로 그가 生存時에 無償移轉한 재산을 누적합산했다가 그가 사망할 때 이 贈與累積額을 사망시의 遺産總額에 合算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生前贈與가 발생할 때 贈與稅를 과세하고, 사망시에 그 生前贈與의 累積額을 유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때 既課稅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統合方法의 전형적인 立法例가 미국의 聯邦遺産稅인바, 生前移轉의 누적합산기간이 移轉者의 平生이고, 이 누적합산된 증여총액은 그 贈與者가 사망할 때 그 贈與者의 遺産總額에 加算하며, 세율은 贈與稅·遺産稅가 單一稅率表로 되어 있다²³⁾.

유산과세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分離·移轉者 基準으로 증여세를

23) 拙著, 「相續課稅論」, 서울: 稅經社, 1990, pp. 75~77 참조.

부과하되, 증여와 증여 상호간의 累積合算期間이 단기간이고 증여액을 사망 유산총액에 합산과세하는 기간도 짧으며, 生存時의 증여액과 死亡時의 유산액에 적용하는 稅率을 별도로 다르게 각각 설정한다. 따라서 統合型이나, 分離型이나의 구별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兩者에 적용하는 세율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전형적인 立法例는 영국의 相續課稅制度이다. 이 제도에서는 贈與財産의 相續遺産累積合算期間이 7년(生前移轉 상호간의 累積合算制度는 영국의 증여세율이 20%의 비례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다만 免稅點 계산에서만 필요하다)이고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 40%(비례)의 2분의 1인 20%의 比例稅率이다²⁴⁾.

취득과세형에 있어서 贈與課稅와 相續課稅를 統合하는 경우에는 無償取得者 基準(transferee of donee basis)으로 그 취득자가 生存時에 受贈한 재산을 누적합산했다가 그 동일한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을 받아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다 合算課稅하는 방법이다. 물론 贈與로 재산을 취득할 때 贈與稅가 課稅되고 사망시의 유산에 合算課稅할 때 既課稅 贈與稅額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統合方式의 전형적인 立法例가 독일의 상속세이다.

生前移轉의 누적합산기간은 10년이며, 이 누적합산액은 그 同一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取得한 상속재산가액에 合算하는바, 相續稅率과 贈與稅率은 초과누진구조의 單一稅率表로 되어 있다²⁵⁾.

취득과세형에 있어서 相續稅와 贈與稅를 分離하는 방법으로는 無償取得者 基準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生前移轉財産 상호간의 누적합산기간이 短期이며 생전이전재산의 사망시 유산에의 합산기간도 짧은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分離方式의 전형적인 立法例는 日本의 상속과세제도이다. 生前移轉財産 상호간의 累積合算課稅制度를 두고 있지

24) 拙著(1990), pp. 80~81 참조.

25) *Ibid* pp. 112~113 참조.

아니하며²⁶⁾, 증여재산의 사망유산에의 合算課稅期間은 3년이고, 증여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 세율에 비해 현격하게 누진구조가 급진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相續課稅制度는 遺産課稅型에 속하면서도 生前移轉에 대한 課稅方法은 약간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이 별도로 각각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分離型(稅率 二本主義)에 속한다. 그런데 贈與稅 稅率은 相續稅 稅率에 비해 명목한계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누진구조도 상속세 세율구조에 비해 현격하게 급진적이다(相法 14, 31의 2).

生前移轉財産 상호간의 累積合算期間과 生前移轉財産의 사망유산에의 累積合算期間은 각각 모두 5년으로 되어 있다(相法 41, 31의 3 ①). 특이한 것은 遺産課稅型을 취하면서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受贈者(donee)로 규정하고 있으며(相法 29의 2①), 생전이전재산 상호간의 누적합산도 受贈者 基準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相法 31의 3①). 이 점에서는 취득과세형의 원리를 담고 있다.

2) 統合型으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分離型을 채택하면서 贈與稅 稅率을 相續稅 稅率보다 높게 설정하고 증여재산간의 누적합산기간과 생전이전재산의 사망유산에 累積合算하는 기간을 각각 3년의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補完機能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여재산 상호간의 누적합산기간 및 사망유산의 증여재산 합산과세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그 不充分性을 높은 贈與稅 稅率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生前移轉에 의해 相續稅 稅率의 높은 限界稅率 적용회피로 節稅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를 지나서 生前移轉 그 자체에 징벌적 과세를 하여 봉쇄하는 制度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6) 종래에는 3年 누적합산과세를 했었는데 1975년에 이를 폐지했다.

贈與를 아예 봉쇄하는 것이 賢策인가? 平均壽命이 점점 길어져 가는 추세에서 富의 生前移轉을 원천적으로 不利하게 하면 富의 소유자는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스스로 保有하게 되는 富의 凍結效果가 일어난다. 富는 다음 世代가 壯年일 때 그에게 移轉되어야 국민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서는 生前贈與에 대한 稅率을 相續稅 稅率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영국의 立法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統合型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⁸⁾. 취득과세형에서 양자의 統合은 無償取得者 基準이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生前移轉財産 상호간의 累積合算期間과 生前移轉財産의 死亡 遺産에의 누적합산기간은 10年으로 延長한다. 이 정도의 누적합산기

27) 村井 正(1987), pp. 312~313.

일본의 村井 교수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의 상속세법이 왜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중과세하는가? 생전이전에 의한 상속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증여세의 부담이 상속세의 그것에 비하여 너무 무거우면 피상속인이 될 자는 재산을 사망시점까지 자신이 보유하게 되며, 그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재산을 死藏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사람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서 상속인이 될 자의 연령도 고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상속인의 연령도 이미 고령화하여 재산취득시기로서도 너무 늦을 수가 있다. 조기에 그 재산이전이 가능하도록 상속과세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28) Shoup 교수는 상속·증여 통합과세상 必要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Shoup, *op. cit.*(1966), pp. 16~17).

- ① 증여액은 稅前金額으로 課稅베이스를 계산해야 한다.
- ② 單一稅率表를 마련해야 한다.
- ③ 單一免稅(a single exemption)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증여에 대한 免稅點과 사망유산에 대한 免稅點을 따로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이 부분은 生前移轉財産을 평생기준으로 누적합산했다가 그것을 전액 사망유산에 合算한다는 전제에서 주장된 것임).
- 4 각 증여자의 受贈者마다 연간공제액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소액이어야 한다.

간이어야만 分割贈與에 의한 누진구조의 높은 限界稅率 適用回避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우리의 贈與稅는 贈與時마다 신고·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1年の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하도록 하며, 행정력이 調査·追及할 만한 價値가 있는 금액수준으로 年間控除(annual exclusion)制度를 설정한다. 그 금액은 우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금액이 높으면 분할증여가 避稅手段이 될 것이고, 너무 낮으면 모든 국민을 증여세의 잠재적 租稅逋脫犯化하면서 법의 實效性만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각종 공제액은 10년 累積合算期間에 적합한 수준의 금액으로 설정한다. 예컨대 기초공제액을 3천만원 정도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10年間이면 每年 3백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제액은 直系尊卑屬間의 증여의 경우 3年間に 1,500만원이다(相法 31의 3①).

넷째, 稅率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 적용하는 單一稅率表로 한다. 단일세율표의 적용은 생전이전재산과 사망이전재산(유산)간에 租稅負擔이 中立性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바, 이것은 세율구조에서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다. 稅率構造에 대한 理論的 檢討

1) 主要國의 稅率 設定例

증여와 死亡遺産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주요 4個國의 세율을 表로 비교하면 <表 III-4>와 같다. 이것은 바로 贈與稅와 相續稅間의 補完關係에 관한 중요한 要素의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遺産課稅型의 미국과 取得課稅型의 독일은 統合稅率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生前移轉과 死亡遺産에 대한 세부담이 中立的이며, 遺産課稅型의 영국은 증여에 대한 세율이 死亡遺産에 대한 세율의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贈與誘引的이다. 取得課稅型의 일본은 生前移

<表 III-4> 우리나라의 相續稅와 贈與稅의 稅率表 (1993.1.현재)

	相續稅	贈與稅
課稅類型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稅率構造	초과누진	초과누진
最高課稅階級	10억원	5억원
最低課稅階級	2천만원	1천만원
最高名目稅率	55%	60%
最低名目稅率	10%	15%
累進段階	5	5
贈與·遺産累積 合算 課稅期間	5년 또는 3년	—
贈與·贈與累積 合算 課稅期間	—	5년 또는 3년

<表 III-5> 主要國의 稅率構造 比較

		遺産課稅型		取得課稅型	
		統合型(美國)	分離型(英國)	統合型(獨逸)	分離型(日本)
相續 課稅	稅率 構造	초과누진	비례	초과누진	초과누진
	最高課稅階級	\$250萬	£15萬 초과	DM.1億	¥10億
	最低課稅階級	\$1萬	£15萬 이하	DM.5萬	¥7,000萬
	最高名目稅率	50%	40%	35% 50% 65% 70%	70%
	最低名目稅率	18%	nil	3% 6% 11% 20%	10%
	累進段階	16	1	25	13
贈與 課稅	最高課稅階級	위 상속과세	위 상속과세	위 상속과세와	¥1億
	最低課稅階級	와 같음	와 같음	같음	¥150萬
	最高名目稅率	上同	20%	上同	70%
	最低名目稅率	上同	nil	上同	10%
	累進段階	上同	1	上同	13
生前贈與의 死亡 遺産合算課稅期間		평생	7년	10년	3년
贈與와 贈與의 累 積合算課稅期間		평생	7년	10년	없음

- 註: 1. 各國 공히 1992년 1월 現在 施行되는 法에 의함.
 2. 獨逸은 親等親疎에 따른 4개 租稅等級에 따라 差別稅率을 적용함.
 3. 英國은 tapering relief를 적용함.

轉에 대한 세율이 死亡遺産에 대한 것보다 累進度가 급격하여 贈與抑制的이다. 우리나라는 課稅類型을 달리하면서도 과세계급의 경우 일본과 같이 그 최고금액을 상속세의 반으로 하여 그 누진도가 급격하고, 세율은 그 最高名目稅率이 일본은 상속세와 동일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最高名目稅率을 상속세보다 5%포인트나 더 높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가 가장 증여 억제적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稅率設定에 대한 理論과 그 評價

가) 親等에 따른 差別稅率

상속세의 세율에서 親等親疎에 근거한 差別稅率의 설정문제를 둘러싸고 유산형성의 寄與, 家族共同體 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긍정하는 견해와 그와는 반대로 富의 分散 등 상속과세의 목적을 내세우면서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이는 논쟁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각국의 立法例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差別稅率의 문제를 응능부담, 富의 分散, 家族共同體 保護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應能負擔과 差別稅率

擔稅能力이란 租稅를 부담할 수 있는 經濟力이다. 그 경제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주관적 가치에다 둘 수도 있겠지만 租稅의 눈에서 보는 經濟力은 객관적인 公正市場價値에 의해 그 大小가 측정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購買力이 그의 經濟力이며, 租稅의 속성이 경제적 부담인 金錢給付이기 때문에 그 經濟力이 바로 擔稅能力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상속취득했거나 큰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受贈받았거나 간에 公正시장가치에 의해 측정한 經濟力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親等親疎에 근거한 差別稅率의 설정을 긍정하는 이론은 이를 객관적 가치로서의 擔稅能力으로 접근하지 않고 主觀的 價値로 평가²⁹⁾하고 있는 것이다.

29) 이 이론의 기초는 부모로부터 받은 相續財產이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상

이와 같이 볼 때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無償移轉者와 無償取得者間에 어떤 血緣의 遠近이 있다고 하여 조세부담상 輕重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應能負擔의 原則과 親等에 따른 차별세율 설정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富의 分散과 差別稅率

富의 分散을 실현하는 장치로서는 無償移轉되는 유산에 높은 세율(沒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축적된 거대한 富의 덩어리를 해체시키면서 그 대부분을 公共部門이 가져가는 방법과, 富의 분산을 광범위하게 하면 할수록 조세부담이 적어지게 함으로써 富의 소유자 스스로가 축적된 富의 큰 덩어리를 해체시켜서 民間部門內에서 그 소유를 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後者の 경우 富의 分散은 富의 소유자의 家族集團內에서만 분산될 뿐 親族集團을 기준으로 하여 富를 총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富가 集中·留保되어 대대로 세습될 수 있는바, 富의 분산이란 그러한 분산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無償移轉者와 血緣 가까운 者가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는 유산에 대해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 우대한다면 오히려 近親直系集團內로의 富의 集中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세율제도는 後者の 富의 분산방법과 조화되지 못한다.

또한 富의 移轉者와 血緣적으로 가까운 者가 유산을 취득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핏줄이 멀거나 남남인 사람이 유산을 취득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沒收稅率에 의해 富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前者의 방법에도 어울리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富의 集中抑制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강하게

속재산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회 일반의 감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인 개념은 논리성도 없다고 Shultz 교수는 표현하고 있다(Shultz, *op. cit.*(1926), pp. 264~265).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親等에 따른 차별세율의 설정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合理性·客觀性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3) 家族共同體의 保護와 差別稅率

親等에 따른 差別稅率을 뒷받침해 온 논거는 家族原理, 즉 가족공동체의 보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家庭은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基礎團體이며, 國家는 단순히 개인이 집합한 먼지더미가 아니라 가정의 聯合體라고 이해할 때 應能負擔이나 富의 分散같은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 家庭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영역을 相續課稅로부터 지키는 데는 寸數가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해서 相續遺產에 差別稅率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제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差別稅率制度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Shultz 교수가 맺은 결론과 같이 국민 모두의 일반적 인식이 差別稅率 課稅를 요구하고 승인한다면 그러한 稅率의 존재 근거는 국민적 합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相續課稅構造는 건국 후 반세기 동안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 일이 없고 학자를 포함한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差別稅率의 導入을 주장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Shultz 교수의 결론은 우리 사회의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相續課稅制度에서 가족공동체의 보호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相續課稅制度의 目的은 기초공제·배우자공제·미성년자공제 등과 墓土·禁養林·累代傳來의 宗中財産 등에 대해서는 一定限度內 非課稅하는 方法 등으로 접근하여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親等에 따른 差別稅率制度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贈與稅 稅率의 高低에 대한 評價

生前移轉에 대한 稅率이 死亡遺產에 대한 稅率보다 누진도가 급격

하면서 높은 것은 租稅理論上 合理性이 적은 방법이다. 조세정책의 관점에서는 부담의 공평만 실현하는 정도로 生前移轉에 부담을 지우면 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젊은 世代가 재산을 승계하여 경제적 창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로써 그러한 生前移轉을 봉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가 상속세에 대한 補完稅이기 때문에 그 生前移轉이 없었더라면 부담하리라고 推定되는 相續稅額만큼을 贈與稅로 徵收할 수 있는 정도로서 못한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는 死亡時點 훨씬 전에 정부가 稅收를 早期에 징수하는 利點이 있고 나아가 生前移轉은 비록 血緣集團內에 머물기는 하지만 富를 早期分散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租稅行政의 便宜性에만 치우쳐서 贈與의 사망유산 누적합산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設定하고 이로 인한 補完機能의 不足을 증여세의 높은 부담으로 補足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前移轉의 凍結效果(locking-in effect)로 나타나고 이는 國民經濟에 負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生前移轉에 대한 稅率이 死亡遺産에 대한 稅率보다 낮은 것은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증여세 세율을 상속세 세율보다 낮게 설정하면 富를 생존시에 일괄 증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壯年世代로 하여금 富를 有效하게 적절히 투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活力을 준다는 것이다³⁰⁾. Vickrey 교수가 경제발전의 原動力은 사회의 富를 有效하게 이용하는 모험투자에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의 과세시기가 상속세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豫納的 성질이 있으며, 따라서 利子相當만큼 증여세 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도 合理性이 있다고 주장한 의견까지 있다³¹⁾. 미국이 1932년 內國入法을 개정할 때 贈與稅率을 遺産稅率의 4분의 3 수준으

30) 村井 正, 前掲書(1987), p. 313.

31) *The OECD Report*(1979), p. 75 ; Collie, *op. cit.*(1973), p. 443.

로 낮게 설정했었는데, 의회가 그렇게 한 의도는 나이 많은 世代로부터 젊은 世代로 재산권이 移轉되도록 助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³²⁾.

그 주장이야 어떻든 贈與稅 稅率을 相續稅 稅率보다 낮추는 경우 贈與의 死亡遺産에의 누적합산기간을 平生으로 하지 아니하는 限 증여세의 相續稅에 대한 보완기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증여가 近親인 가족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富의 分散效果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바로 後述하는 바와 같이 贈與稅 稅率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節稅誘引이 무한정 生前移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여를 제약하는 稅制外的 要因의 힘이 稅制誘引을 충분히 相計하고도 남는다는 의견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라. 相續·贈與에 대한 統合稅率의 構想

稅制는 사람들의 경제행위 行態를 歪曲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贈與稅의 부담수준이 生前贈與를 촉진하는 것도, 抑制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富의 보유자가 그의 재산을 無償處分하는 自由에 대하여 中立的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贈與稅 부담수준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자면 영국의 贈與稅 稅率과 같이 生前移轉을 稅制가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贈與稅 稅率과 같이 生前移轉에 負의 誘引效果(disincentive)를 미치지 않는 세율의 구상이 次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稅率을 一元化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행의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서 統合稅率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은

32) Collie, *op. cit.*(1973), p. 443. 그러나 DeWind 변호사는 그것이 잘못 생각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DeWind, *op. cit.*(1950), p. 107).

독일의 相續課稅制度和 같은 구조로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를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통합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試案이며,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그 적정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表 III-6> 相續稅 稅率表(試案)

(單位 : %)

課稅階級金額	稅率
2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천만원+2억원초과액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3천만원+5억원초과액의	40
10억원 초과 3억 3천만원+10억원초과액의	50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아 遺産課稅型 相續稅에서 현행 세율(1993.1.1. 현재)의 최고과세계급 10억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 연구의 稅率試案에서도 最高名目稅率이 적용되는 課稅階級金額을 역시 10억원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取得課稅型 相續稅로 전환하는 경우 相續稅 稅率은 공동상속인 등의 분할취득하는 재산가액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最高名目稅率이 적용되는 課稅階級金額은 같지만 최소한 현행 세율의 반 정도로 낮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相續稅額 計算과 그 例

1) 相續稅 總算出稅額 算定

각 상속인의 '法定相續分課稅標準'에 위의 초과누진세율을 각각 적

용하여 각 상속인의 '法定相續分算出稅額'을 산정한다. 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산출세액을 모두 합계하여 '相續稅 總算出稅額'을 산정한다.

2) 各 相續人의 算出稅額 算定

위의 '相續稅 總算出稅額'에 각 상속인 등(상속인·수유자·사인수증인)의 '實地課稅價額'(채무 등 공제후의 금액)이 상속세 '實地課稅價額의 合計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상속인 등의 '算出稅額'을 산정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각 상속인 등에 해당되는 既課稅 贈與稅額을 차감하면 각자의 相續稅 納付稅額이 산출될 것이다.

가) 各 相續人의 法定相續分 稅額計算

<表 III-7> 法定相續分課稅標準에 대한 稅額計算表

(單位:천원,%)

	아 들	딸	아 내	수 유 자
법정상속분 과세표준	1,040,000	1,015,000	800,000	500,000
해당 한계 세율	50	50	40	30
법정상속분 산출세액	350,000	337,500	250,000	130,000

나) 各 相續人의 實地取得分 算出稅額 計算

① 法定相續分에 대한 算出稅額 合計(단위 : 천원)

$$\cdot 350,000 + 337,500 + 250,000 = 937,500$$

② 各 相續人의 實地取得分 課稅標準 合計額(단위 : 천원)

$$\cdot (\text{아들}) 1,240,000 + (\text{딸}) 815,000 + (\text{아내}) 800,000 = 2,855,000$$

첫째, 아들의 實地取得分 算出稅額(단위 : 원)

$$\cdot 937,500,000 \times \frac{1,240,000}{2,855,000} = 407,180,385$$

둘째, 딸의 實地取得分 算出稅額

$$\cdot 937,500,000 \times \frac{815,000}{2,855,000} = 267,622,591$$

셋째, 아내의 實地取得分 算出稅額

$$\cdot 937,500,000 \times \frac{800,000}{2,855,000} = 262,697,022$$

<表 III-8> 各 相續人 등의 納付稅額 計算表

(單位: 원)

	아 들	딸	아 내	수유자
實地取得分算出稅額	407,180,385	267,622,591	262,697,022	130,000,000
既課稅贈與稅控除	194,000,000	58,000,000	-	-
相續稅納付稅額	213,180,385	209,622,591	262,697,022	130,000,000

다) 控除할 既課稅 贈與稅額의 計算(單位: 천원)

	(아들분)	(딸분)
受贈財產價額	700,000	300,000
基礎控除額	- 40,000	- 40,000
課稅標準金額	660,000	260,000
	× 40%	× 30%
算出稅額	194,000	58,000
既課稅贈與稅	0	0
納付稅額	194,000	58,000

4. 贈與에 대한 稅制外的 抑制要因

통상 贈與稅 稅率을 相續稅 稅率과 같도록 統合稅率을 설정하거나

贈與稅 稅率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면 生前移轉이 너무 촉진될 것으로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설사 그와 같이 세율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稅制 外的 要因에 의해 증여는 억제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贈與稅와 相續稅의 보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의 정확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이 贈與의 抑制要因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가. 死亡豫見에 대한 주저와 不確實性

모든 사람은 자신의 死亡에 대해 豫見하는 것을 주저하고 혐오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망시기가 언제일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재산의 生前移轉을 장래의 적정한 시기에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미루게 된다. 즉, 節稅를 위한 재산의 증여계획 수립과 그 실행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것이다.

나. 統制力 喪失에 대한 우려

모든 사람은 그가 소유하는 재산을 통해서 그의 재산에 대한 潛在的 受益者(potential beneficiaries), 즉 子女, 조카 등과 그 외에 그가 支配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위치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富裕한 사람들은 '돈은 힘이다(money is power)'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子女의 成熟은 아버지에게 대한 威脅(threat)이 된다고 한다. 아들의 정신적·심리적 성숙은 아버지의 우위성 쇠퇴와 그가 老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늙어서도 할 수 있는 富의 管理를 통해 자신의 優位性을 연장하려

33) Looker, *op. cit.*(1950), pp. 52~53, p.69 ; Shoup, *op. cit.*(1966), pp. 23~24 ; Pechman, *op. cit.*(1983), p. 234 ; Pechman, 石弘光外(譯), 前掲書(1988), pp. 154~155.

고 한다. 특히 축적된 富가 株式 等인 경우 그의 無償移轉은 바로 기업에 대한 統制力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된다³⁴⁾. 그래서 보유재산의 대부분을 生前移轉하는 것은 바로, 어느 시점에서 자식에 대한 統制를 끝내고, 어느 시점부터 아내의 행주치마끈에 매달려 사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가(Where does wise parental control end, and the apron string begin?)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⁵⁾.

다. 租稅法에 대한 知識의 不足

富의 蓄積에 성공한 사람들도 의외로 조세에 관한 常識이 부족하고, 財産의 贈與와 같은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법률가의 助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대부분이 상속계획에 관련된 돈의 지출에 인색하다. 때로는 전문적인 자문에 대한 높은 酬價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수년 내에 相續課稅에 관한 稅率이 낮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期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不動産이나 株式의 價値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여 死亡時點의 相續稅 負擔이 더 커질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지 못하다. 즉, 遺産價値의 凍結(freezing estate)利益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³⁶⁾.

34) 美國의 Looker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實例를 들고 있다. 즉, 그의 고객 중 성공했고 활동중인 한 사람은 그의 젊은 아들을 위해서 信託을 設定한 것을 후회했다. 신탁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의결수의 多數를 획득하게 되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 없이 獨自의 公司의 重要업무의 결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고객은 앞으로 不足한 생활비를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35) Looker, *op. cit.*(1950), p. 53.

36) 미국에서는 사망유산에 누적합산하는 그 以前의 贈與財産價額은 합산하는 시점에 다시 평가하지 아니하고 증여 당시에 과세상 평가한 금액을 當年度 증여액이나 사망유산에 합산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증여를 할 때 과세평가한 것은 計算時點에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IRC. sec.2504(c), Regs. sec.25,

라. 子女에 대한 우려

富를 所有한 者 중 健全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의 子女가 부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may not want spoil his children). 돈은 술과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는 子女가 그의 축적한 富를 消盡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그들의 子女가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재산의 증여를 연장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美國 財務部의 통계에 의하면 1976년 이전에 贈與稅 稅率이 유산세 세율의 4분의 3 수준으로 낮았던 시대까지도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보유함으로써 生前移轉에 의한 節稅利益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³⁷⁾. 그 節稅效果에도 불구하고 生前移轉이 그렇게 촉진되지 아니한 것은 稅制 外的인 증여의 抑制要因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던 것이다.

稅制에 의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經濟行態로 유인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기업활동이 아닌 개인적·사생활적 經濟行態는 전적으로 節稅 동기에만 지배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사례의 경우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는 다른 점이 많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면서 死亡遺産에 대한 세율과 生前移轉에 대한 세율을 同一하게 설정하고 그 누적합산과세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한다면 租稅의 中立性이 이룩되면서 生前移轉을 무제한 촉발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2504-2 참조(Stephens and others, *op. cit.*, 1983, pp. 9~37). 그러므로 증여 당시 100만달러이었던 재산이 사망시점에 200만달러짜리가 되었어도 사망 유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100만달러로 고정된다. 이것을 'freezing estate effect' 라고 한다(Cooper, *op. cit.*(1979), pp. 12~13 참조).

37) 美國은 1976년에 IRC를 개정하여 유산세와 贈與稅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統合 稅率構造로 바꾸고 다음 해부터 이를 시행했다.

第3節 配偶者間 財産相續의 課稅方法

1. 基本方向

가. 現行 課稅方法과 主要國間 比較

配偶者間 財産相續과 生前移轉財産에 대한 課稅方法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먼저 主要國의 立法例를 比較·概觀하면 <表 III-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表 III-9 > 主要國의 配偶者 財産相續課稅 比較(1992.1. 현재)

		輕減方法	相續하는 경우	贈與하는 경우
遺 産 課稅型	(美)	재산가액공제	배우자상속분 전액공제	左同(공통적용)
	(英)	면제	배우자상속분 전액면제	左同(공통적용)
取 得 課 稅 型	(日)	세액공제	(計算例 참조)	연간공제 ₩60萬 주거용부동산 증여의 배우자공제 ₩2千萬
	(獨)	재산가액공제	배우자 기초공제 DM.25萬 배우자공제 DM.25萬 증가재산공동제와 과세유예제도	左同(공통적용)
遺 産 課稅型	(韓)	上同	기초공제 6천만원 배우자 공제 1억원+6백만원×결혼연수	배우자간 증여공제 1천5백만원+1백 만원 ×결혼연수

<日本の 配偶者税額控除 計算表>

「事例」(단위:천엔)

- 相續人 全員の 課税價額 合計 100,000,000
- 配偶者が 分割取得한 課税價額 60,000,000
- 相續税 總額(相續人 各者分の 合計) 40,750,000
- 配偶者 取得分에 대한 税額 28,500,000

「計算」(단위:천엔)

$$\begin{aligned} \textcircled{1} \text{ 相續税 總額} &\times \frac{\text{配偶者分 課税價額}}{\text{課税價額 合計額}} \\ &= 40,750,000 \times \frac{60,000,000}{100,000,000} = 24,450,0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circled{2} \text{ 相續税 總額} &\times \frac{\text{課税價額 合計額} \times \frac{1}{2}}{\text{課税價額 合計額}} \\ &= 40,750,000 \times \frac{100,000,000 \times \frac{1}{2}}{100,000,000} = 20,375,000 \end{aligned}$$

* 上記 산정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textcircled{3} 28,500,000 - 20,375,000 = 8,125,000(\text{납부세액})$$

** 과세가액 합계액의 2분의 1이 4천만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천만엔으로 한다(竹下 重人, 1987, pp. 141~142).

위의 立法例의 비교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형은 遺産課稅型에 속하면서도 配偶者 財産相續에 대한 과세가 아직도 상당히 가혹하다. 거의 無差別課稅에 가까운 것이다.

나. 輕減의 根據

生存配偶者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財産에 대하여 相續課稅 부담을 輕減하거나 免除해야 할 理由 등에 대한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³⁸⁾.

1) 同一世代

相續課稅는 世代間에 財産이 無償移轉될 때마다 課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공통된 인식이다. 즉 一世代 一回課稅의 原則을 그 기초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夫婦는 하나의 生活共同體로서 같은 世代에 속하는데 어느 배우자 一方이 먼저 사망할 때 課稅하고 그 생존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또 課稅하면 1세대 2회 課稅가 된다. 그리고 夫婦間 재산상속 등에 면세하는 경우에도 正常的인 경우라면 생존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死亡할 것이므로 그때 국가는 免除한 稅額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2) 富의 形成에 대한 共同貢獻

富의 축적에 대한 배우자 쌍방의 공헌 문제는 民法上 夫婦財産制度

38) Shoup, *op. cit.*(1966), p. 108; Shoup 교수는 상속과세의 세 가지 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를 상속과세의 목적으로 3층구조(the three-layer structure of aims)라고 부르고 있다.

- ① 횡재성 財産에 대한 과세(taxing windfalls)
 - ② 一世代 一回課稅(taxing property once a generation)
 - ③ 부의 집중 감소(reducing concentration of wealth)
- 이 외에 一世代 一回課稅를 주장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The OECD Report(1979), p. 79; DeWind, *op. cit.*(1950), p. 110; Casner, *op. cit.*(1967), p. 573 이하; 村井 正, 前掲書(1987), p. 221; 長期稅制のありかたについての答申(1971), p. 183; *Shoup Report*(1950), pp. 88~89 等 多數.

여하에 따라 配偶者間 財産의 無償移轉에 대해 相續課稅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夫婦財産契約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限, 그 재산관계는 民法 제830조 내지 제833조의 法定 財産制에 따르고 있다(民 829①).

첫째, 夫婦別算制를 채용하여 夫婦 一方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固有財産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特有財産으로 하며, 夫婦 어느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夫婦의 共有 財産으로 推定하고 있다(民 830②). 配偶者 어느 一方의 固有財産 또는 共有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은 配偶者 一方의 死亡으로 인한 相續課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夫의 고유재산은 夫의 사망으로 그의 생존 배우자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부부 共有財産은 夫의 死亡으로 상속되는 재산 중에 夫에게 귀속되는 그의 持分만을 배우자가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상속세가 당연히 課稅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相續課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어느 배우자 일방의 名義로 取得한 特有財産이다. 法の 形式理論에 충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配偶者가 사망한 때 그의 生存配偶者는 사망한 配偶者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相續稅를 課稅하는 것은 理論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法の 實質論理에 충실하는 경우 아내의 家事勞動과 가정관리가 있음으로 해서 남편의 노동력이 再生産되고, 남편의 이름으로 축적된 富는 남편만의 勞動의 結果가 아니고 아내의 가사노동 내지 가정관리까지 합친 複合勞動의 結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아내의 가사노동은 요리·育兒 등 家事作業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을 유지·운영하는 등의 家庭管理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³⁹⁾. 따라서 비록 결혼 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은 배우자가 서로 協力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經濟的 基

39) 金疇洙, 前掲書(1989), p. 157.

礎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所有는 實質的으로 夫婦共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실질논리에 따르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持分만이며, 아내에게 귀속되는 지분은 共有物의 分割이므로 상속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Shoup 교수는 遺産의 축적과 保存은 夫婦 쌍방의 共同努力의 結果 (the result of the joint efforts of husband and wife)라고 하고⁴¹⁾, Magill은 배우자간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해 相續課稅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유산형성에 대한 쌍방 배우자의 공헌에 대한 比重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같은 동양문화권인 日本에서도 아내는 가정에서 家事에 專念하면서, 子女를 양육하는 家事勞動을 제공하고, 남편만이 밖에서 生産노동을 하여 收入을 얻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所得은 夫婦의 共有라고 보는 見解(所有共有論)가 있는바, 이것도 같은 立場의 表明이다⁴³⁾. 이러한 觀點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배우자의 財産相續은 결혼 후 增加된 유산의 잠재적 持分을 分割하는 것과 그 性質이 같다.

3) 單一의 生活共同體

본래 상속과세는 世代間 遺産移轉, 또는 하나의 夫婦家族單位에서 그 단위 밖의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이 이전될 때에 행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夫婦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社會·經濟的 單位(a socio-economic unit)이다⁴⁴⁾. 이러한 生活單位 안에서 이루어진 夫婦간의 재

40) 李太載(1969), 「夫婦別途制에 대한 立法論의 考察」, 『法學의 諸問題』, 惠南高秉國 博士 選曆記念, 서울: 경희대학교, p. 531.

41) *Shoup Report*(1950), pp. 88~89. 자기 노력에 의한 유산을 승계하는 미망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

42) Magill, *op. cit.*(1943), p. 32; Vickrey, *op. cit.*(1972), p. 215, Foot-note 6 참조; Shultz, *op. cit.*(1926), pp. 271~272. 여기에서는 未亡 배우자는 유산 축적상의 組合員(a partner in the accumul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3) 吉良 實, 前掲論文(1980), p. 15; 金子宏, 前掲論文(1975), p. 53; Casner, *op. cit.*(1967), p. 549.

44) DeWind, *op. cit.*(1959), p. 110; McNulty, *op. cit.*(1983), p. 376.

산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과세의 經濟的 目的上 重要性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생존배우자에게 무거운 課稅衝擊(a heavy impact of taxation)을 주지 않는 것은 가족공동체 생활이라는 사회 모습에 비추어 正當性이 있는 것이다. 즉, 社會的 基礎共同體로서의 家族生活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生存配偶者의 基本生活保障

특히 아내가 生存配偶者일 때 그 未亡人은 남편의 사망이 唯一한 扶養人의 상실이며, 특히 遺産이 많지 않을 때, 그 유산 전액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그의 생활수단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⁴⁵⁾. 최소한 未亡配偶者가 餘生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金額까지는 國家의 課稅權이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配偶者間 財産相續에 대한 相續課稅의 경감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존배우자 등의 幸福追求權·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憲10 前文後段, 34①)의 物質的 充足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행복의 개념은 物質的 豊요와 精神的 만족의 동시 충족이라고 해석할 때⁴⁶⁾ 配偶者間 財産相續에 대하여 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生存配偶者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家族共同體를 課稅上 보호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Andrews 교수도 相續課稅에 있어서 무제한의 配偶者控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현대사회는 종래의 家族制度下에서의 親子關係와 같은 子의 부모에 대한 扶養義務觀念이 점점 稀박해져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生存時에 他方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장래 그의 생활을 보장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⁸⁾. 표현은 다르지만 생존배우자의 基本的 生活保障에다 배우자 재산상속에 대한 課稅輕減

45) Shultz, *op. cit.*(1926), p. 271~272.

46) 權寧星, 前掲書(1989), p. 301, pp. 530~531.

47) Andrews, *op. cit.*(1973), p. 465.

48) 長期稅制のあり方についての答申(1971), p. 183.

의 根據를 두고자 한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어느
 一方의 사망이 생존배우자의 擔稅能力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배우자간 재산상속을 橫財性 財産(windfall)의 취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5) 社會的 認識과의 調和

結婚한 후에 축적한 재산은 法的 所有權의 기술적인 觀點(the
 technical aspects of legal ownership)을 떠나서 통상 平均人에 속하
 는 夫婦는 그 재산을 '우리의 재산(our property)' 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보다 現實的인 개념(a more realistic concept)이다. 이러한 社會平
 均人의 夫婦 哲學(the philosophy of the average husband and wife)
 이 稅制에 담겨져야 한다⁴⁹⁾. 그리고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을 상대
 방에 대한 贈與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社會的
 常識이다. 이러한 인식은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⁵⁰⁾.

어떠한 法이든 그 내용이 健全한 社會常識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現實과 괴리되며, 건전한 사회인도 法에 대하여 抵抗感을 가
 지게 되는 것이다⁵¹⁾. 또한 증여 아닌 증여에, 그리고 상속재산 아닌
 재산에 무리한 課稅를 하게 되면 국민의 납세의식은 악화되어 간다.
 配偶者間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相續課稅를 계속하는 것은 一世代 一
 回課稅의 原則, 應能負擔의 原則, 橫財性 財産取得에 대한 重課稅 목
 적, 富의 分散目的 등, 그 어느 것과도 제대로 조화하지 못하면서 가

49) Casner, *op. cit.*(1967), p. 549.

50) 長期稅制答申(1971), p. 183.

51) 贈與課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 즉, 남편만이 生産活動
 을 하는 가정에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사면서 이를 부인의 명의로 등기했
 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부인은 正直하게 남편이 번 돈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증여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贈與稅가 과세된다. 억울한 남편은 그러면 사실대로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랬더니 다시 贈與稅가
 과세된 것이다. 선량한 사람이 집 한 채를 나라에 강제로 바친 꼴이다. 이
 러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한 후인 1982년에 이르러서 상속세법 제29
 조의 2 제4항에다 수증자가 그 受贈財産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족공동체의 物的 基礎에 대해서만 租稅衝擊을 크게 줄 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相續課稅의 輕減問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評價해 보고 그 改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全額控除法과 1/2 控除法에 대한 檢討

가. 全額控除法과 그 批判

全額控除法은 배우자 一方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존배우자가 실지로 상속받는 유산액, 그리고 사망 전, 즉 생존시에 受贈한 재산 전액을 限度額 없이 무제한 배우자공제액으로 인정하는 方法이다.

미국에서는 1981년의 經濟再建稅法에 의하여 비로소 實定法化되었다. 英國이 생존배우자가 상속·증여받는 재산의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免除하는 것도 같은 方法이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전액을 控除(deduction)하면 사실상 배우자 相續分 내지 受贈分에는 전혀 조세가 부담되지 아니하고 배우자간에는 조세부담 없이 자유로이 재산을 無償移轉 시킬 수 있기 때문에 英國의 경우처럼 免除(exemption)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全額控除法에 대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財務部는 상속과세를 免除해서 그 부담을 없애버리는 제도가 아니고, 생존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課稅가 연기되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고 표현했다⁵²⁾.

이 方法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다.

첫째, 無制限의 配偶者控除制度를 채택하면 無償移轉者가 그들의 子女를 희생시키고 그의 재산 전부를 생존배우자에게만 물려주도록 租稅制度가 유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되고 있다.

遺産이 巨額인 경우 그 遺産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만 移轉하면 중국

52) Westfall, *op. cit.*(1970), p. 997.

적으로 부담하는 相續課稅 負擔總額은 많아져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遺産課稅型 相續稅의 경우 半額控除法下에서 남편이 4억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산의 반은 아들·딸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생존배우자에게 주었다. 이 경우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2억달러에는 면세되고, 아들·딸이 상속받는 2억달러에는 과세될 것이다. 그런데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원본은 소비하지 아니하고 원본의 果實로만 생활하다가 사망했다면, 이때에 생존배우자가 받은 유산 2억달러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받는 누진구조의 限界稅率이 낮아져서 節稅效果가 발생한다.

반대로 全額控除法下에서 남편의 유산 4억달러 전액을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았다면 그 당시는 상속세 부담이 없지만 그녀가 사망할 때 남기는 유산 4억달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적용받는 누진구조의 限界稅率이 높아지므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상속과세의 총액은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제한의 배우자공제가 生存配偶者에게만 유산을 집중시키는 데는 그 한계가 內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소비해 버리고 사망한다면 그 결론은 달라진다. 즉, 유산전액을 생존배우자에게 移轉하는 것이 종국적인 총부담세액에서 보아도 節稅效果가 커진다. 그런데 상속과세는 사망시에 남은 축적된 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基本原理이다. 生存期間時에 소비해 버린 저축은 상속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中年期까지 富를 축적하고 그 후에는 이를 소비한다. 그 소비로 인해 감소된 富는 상속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생존배우자가 무상취득한 富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原理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소비는 소비지출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稅金을 負擔하게 될 것이다.

둘째, 稅收側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批判이 가해지고 있다³³⁾. 즉 무

제한의 배우자공제는 유산이 모두 생존배우자에 遺贈됨으로써 현재 얻고 있는 상속세 수입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이 稅收損失을 생존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유산을 대부분 소비해 버리는 경우 그 세수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보다 큰 年齡差로 젊다고 한다면 그 상속세 부담의 移延期間이 매우 길어지며, 따라서 一世代 一回課稅의 原則에도 어긋난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移延期間이 길면 길수록 상속받은 재산의 원본이 消盡될 우려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全額控除法에 대한 비판은 경청할 만한 價値가 있다. 稅收減少의 관점에서 본 비판은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적 조세부담 총액이 클 것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무제한 생존배우자에의 遺贈濫用이 제한된다고 하는 반론은, 계산상으로는 그러한 것도 사실이지만, 미래에 무거운 부담을 가하는 制約보다는 현재의 가벼운 부담이 유인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節稅效果의 誘引보다 子女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무제한 생존배우자에의 遺贈濫用に 대한 제약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 1/2 控除法과 그 批判

이 방법은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 1까지를 配偶者控除額으로 하는 것과 사망한 배우자의 課稅遺產總額의 2분의 1까지를 공제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後者の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그의 재산 전부를 생존배우자에게 移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유산액의 2분의 1은 상속과세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方法은 배우자공제의 濫用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前者의 方法은 1950년의 日本이 채택했던 方法인데, 效果가 같게

나타나는 ½세액 공제방법으로 바꾸었다가 폐지했는바, 그것은 배우자 재산상속에 대한 세부담의 輕減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後者의 방법은 1948년에 미국에서 채택했다가 후에 全額控除法로 발전시켰으며, 日本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배우자세액공제방법도 그 輕減效果는 이 方法과 거의 같은 것이다. 논의해 볼 價値가 있는 것은 後者, 즉 課稅遺產總額의 2분의 1을 限度로 하는 배우자공제방법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배우자공제를 받았던 유산액은 그 유산을 상속받은 生存配偶者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과세를 받게 되는데, 배우자공제의 節稅效果는 그 생존배우자가 상속 등으로 재산을 무상취득하기 전의 所有財産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즉 생존배우자의 유산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될 限界稅率의 차이에서 오는 절세 효과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總租稅負擔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것은 全額控除法에 대한 비판과 그 내용이 사실상 같으므로 특별히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자기의 이름으로 축적된 財産이 많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와 생존한 배우자간에 遺産을 均衡化하는 效果가 있어서 배우자공제에 의한 輕減效果가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遺産의 均衡化 效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느냐 하는 偶發事實(the happenstance)에 따라 조세부담이 매우 不公平해진다고 본 것이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불공평은 全額控除法에 대하여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½控除法에 대한 비판만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批判은 半額控除法이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한 輕減으로서는 충분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보인다.

54) Looker, *op. cit.*(1950), p. 61.

55) Casner, *op. cit.*(1967), p. 549.

3. 우리에게 맞는 輕減方法

가. 配偶者控除의 改善 必要性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한 兩性間의 平等取扱은 본래 租稅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私法秩序의 기본을 이루는 司法 차원의 문제이다. 民法이 결혼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共同所有를 인정함으로써 持分을 긍정하고 있다면 배우자간의 재산상속은 持分의 分割取得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持分의 범위 안에서는 당초부터 相續稅 課稅問題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족공동체의 物的 基礎가 되는 재산이 비록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심정적 인식은 부부가 함께 우리의 財産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民法은 남편만의 재산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法과 국민의식의 괴리일 수 있다. 상속세법상의 배우자에 대한 과세상 여러 가지 문제는 이 괴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民法上的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夫婦財産制度에 관한 규정을 탄력성 있게 해석하자고 하는 民法學者의 의견이 있다. 즉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名義뿐만이 아니고 그 재산취득의 對價까지도 그 名義者가 부담하여 實質的으로 그 재산임을 舉證하지 아니하면 그의 特有財産이 아닌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己名義로 취득한 재산은 대외적으로만 名義者의 소유로 推定받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추정은 反證에 의하여 뒤집을 수 있게 된다⁵⁶⁾.

그러나 혼인 후 축적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한 후에 상속과세 과정에서 아내가 그 재산취득의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했다든가 그 재산축적에 대하여 자기가 기여한 정도 등을 立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론은 相續課稅

56) 金疇洙, 前掲書(1989), pp. 157~158.

상의 배우자 세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배우자 상속과세를 稅法的 視角에서 보면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輕減制度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의 立法例에서 보아도 民法上的 夫婦財産制度和 배우자간에 移轉되는 富의 상속과세제도는 필요적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과세 경감은 租稅法的 次元에서 그 獨自的 基準에 따라 그 개선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보고자 한다. 이는 應능부담·富의 集中抑制·一世代 一回課稅·富의 形成에 대한 共同貢獻·부부의 單一生活體 意識·未亡 配偶者에 대한 基本生活 보장 등과 우리의 현실이 조화되는 그러한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具體的 改善方法

첫째, 前述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도 배우자간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한 상속과세 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기 힘들다. 문제는 잠재적 共有持分理論을 바탕으로 하면서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配偶者控除制度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一世代 一回課稅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전액 非課稅하고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남기는 재산에 대하여 課稅하는 방향으로 진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 등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의 登記制度가 아직 形式的 審査主義에 머물러 있어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파악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실명거래가 실시되어 과세관청이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포착한다고 하더라도 富의 일부계층에의 과도한 집중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全額控除法(全額免除法)으로의 전환은 상속과세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다.

둘째,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우자간 富의 無償移轉 課稅에 대하여는

재검토·재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現行制度上 配偶者間 財産相續과 財産贈與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財産相續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서 기초공제금액적인 1억원과 6백만원에 結婚年數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혼인생활기간이 35년일 경우 3억 1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과세한다.

財産贈與의 경우에는 배우자증여 기초공제액적인 1천 5백만원과 1백만원에 結婚年數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과세한다. 혼인생활기간이 35년인 경우 5천만원의 배우자증여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바탕에 潛在的 共有持分理論을 깔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현실적 고려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공제수준이 비현실적으로 過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配偶者 相續控除는 다음과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① 배우자 상속기초공제액은 2억원 정도로 한다. 이는 혼인기간의 長短과는 관계 없이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 基礎控除額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과세평가의 수준·물가수준·民富의 축적수준·사회적 의식변화 등을 종합·고려하여 그 시기에 맞게 조정해 가야 한다. 입법당국이 이를 탄력성 있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배우자간 富의 無償移轉에 대한 全面的 非課稅制로의 전환요구를 더욱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

②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控除를 婚姻期間의 長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을 강구한다. 그 공제액 계산방법은 혼인생활이 길면 길수록 1년분의 공제금액이 커지도록 구상한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 1년에 대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결혼기간 10년 이하는 年 1천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年 2천만원, 20년 초과는 年 3천만원, 그리고 혼

인공제액의 최고한도액은 6억원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配偶者 相續基礎控除額 2억원과 婚姻控除額을 합제한 공제액은 최대 8억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은 상속과세가 富의 집중을 억제하는 기능, 상속유산을 축적하는 데에 상대배우자가 기여한 공로의 반영, 그리고 생존배우자의 기본생활 보장 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금액을 모색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배우자 증여혼인공제는 기초공제 없이 혼인기간 1년에 2천만원씩으로 설정하되 기초공제가 없으므로 그 최저공제금액을 6천만원으로 하며 그 最高控除額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限度를 둔다.

그리고 稅率一本主義로 하면서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을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증여와 증여 상호간, 그리고 증여와 사망유산 상호간의 累積合算課稅期間을 10년으로 하면서 아울러 그 누적합산하는 기간 내에서도 배우자증여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重複적으로 공제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計算事例 例示

上述한 統合稅率表를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기초공제와 배우자혼인공제 및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1) 상속·혼인공제의 정리

① 배우자 상속혼인공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배우자상속기초공제에 가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인바, 위의 기준에 따라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공제금액을 表로 만들면 <表 III-10>과 같다.

② 배우자 증여공제는 혼인생활 1년에 균일하게 2천만원으로 하고 그 최저액을 4천만원, 그리고 최고공제한도를 2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表를 만들어 볼 필요가 없다.

<表 III-10> 配偶者 相續婚姻控除額表(試案)

(單位:천원)

婚姻期間(年)	累 積 控 除 金 額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5	50,000
6	60,000 年 10,000
7	70,000
8	80,000
9	90,000
10	100,000
11	120,000
12	140,000
13	160,000
14	180,000
15	200,000
16	220,000 年 20,000
17	240,000
18	260,000
19	280,000
20	300,000
21	330,000
22	360,000
23	390,000
24	420,000
25	450,000
26	480,000 年 30,000
27	510,000
28	540,000
29	570,000
30	600,000

註: 배우자 상속혼인공제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례에 의한 적용예

① 아래 표에서 수증자 내지 상속인인 배우자는 1993년 12월 31일 현재 혼인생활 5년이 경과한 者이다. 단, 그 기간에는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없다.

② 증여 상호간과 증여의 사망유산에의 累積合算 課稅期間은 10년으로 한다.

③ 배우자상속공제 중 상속기초공제액, 상속혼인공제액과 그 공제한도액, 증여공제액과 그 최저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등은 前述한 바와 같다.

④ 贈與稅 年間控除額은 300만원 미만으로 하되 그 미만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를 초과하면 그 전액을 과세한다.

⑤ 증여와 상속이 개시된 시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單位:천원)

1994	9	4		……(受贈) 50,000
1995	8	3		……(受贈) 200,000
1996	7	2		……(受贈) 10,000
1997	6	1	10	→ 「상속 I」 500,000 (유산의 ½)
1998	5		9	……(受贈) 300,000
1999	4		8	……(受贈) 100,000
2000	3		7	
2001	2		6	
2002	1		5	→ 「상속 II」 500,000 (유산의 ½)
2003			4	
2004			3	
2005			2	……(受贈) 90,000
2006			1	→ 「상속 III」 500,000 (유산의 ½)

3) 事例에 의한 計算

가) 「상속 I」의 경우

첫째, 各年度 贈與稅 計算(單位:천원)

① 1994년 증여세

$$\cdot 50,000 - 120,000 = -70,000$$

* 배우자증여공제는 '120,000 = 20,000 × 혼인기간 6년' 과 같이 산정함.

② 1995년 증여세

$$\cdot 50,000 + 200,000 - 140,000 = 110,000(\text{과표})$$

$$\cdot 110,000 \times 20\% = 22,000(\text{세액})$$

* 배우자증여공제는 '140,000 = 20,000 × 혼인기간 7년' 과 같이 산정함.

③ 1996년 증여세

$$\cdot 50,000 + 200,000 + 10,000 - 160,000 = 100,000(\text{과표})$$

$$\cdot 100,000 \times 20\% = 20,000(\text{산출세액})$$

$$\cdot 20,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19,230 = 770(\text{세액})$$

* 배우자증여공제는 '160,000 = 20,000 × 혼인기간 8년' 과 같이 산정함.

* 贈與稅 既課稅 控除額 계산

$$\cdot \text{증여세 실지과세액 } 22,000$$

$$\cdot \text{증여세 공제한도액}$$

$$20,000 \times \frac{50,000 + 200,000}{50,000 + 200,000 + 10,000} = 19,230$$

둘째, 1997년 「상속 I」의 상속세 계산(單位:천원)

$$\cdot 50,000 + 200,000 + 10,000 = 260,000(\text{유산가산 증여누적액})$$

$$\cdot (500,000 + 260,000) - (200,000 + 130,000) = 430,000(\text{과표})$$

$$\cdot 430,000 \times 30\% = 109,000(\text{산출세액})$$

$$\cdot 182,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22,770 = 86,230(\text{세액})$$

* 상속자기초공제는 200,000임.

* 배우자상속공제액 130,000은 배우자상속기초공제액 200,000과 혼인공제 9년간분 90,000의 합계액 290,000에서 이미 증여세에서 공제받은 배우

자 증여공제액 160,000을 차감한 금액임.

* 贈與稅 既課稅 控除額 계산

- 증여세 실지과세액 22,770
- 증여세 공제한도액

$$109,000 \times \frac{50,000 + 200,000 + 10,000}{260,000 + 500,000} = 37,289$$

나) 「상속 II」의 경우 (1997년 「상속 I」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첫째, 증여세 계산(單位:천원)

④ 1998년 증여세

- $50,000 + 200,000 + 10,000 = 260,000$ (가산할 증여누적합산액)
- $(260,000 + 300,000) - 200,000 = 360,000$ (과표)

* 배우자증여공제는 '200,000 = 20,000 × 혼인기간 10년' 과 같이 산정함.
이는 바로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액과 같음.

- $360,000 \times 30\% = 88,000$ (산출세액)
- $88,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22,770 = 65,230$ (세액)
- * 贈與稅 既課稅 控除額 계산

- 증여세 실지과세액 22,770
- 증여세 공제한도액

$$88,000 \times \frac{50,000 + 200,000 + 10,000}{260,000 + 300,000} = 40,857$$

⑤ 1999년 증여세

- $50,000 + 200,000 + 10,000 + 300,000 = 560,000$
(가산할 증여누적합산액)
- $(560,000 + 100,000) - 200,000 = 460,000$ (과표)

* 배우자증여공제는 혼인기간이 11년이므로 220,000이나 공제한도액 200,000만 공제하는 것임. 이하 같음.

- $460,000 \times 30\% = 118,000$ (산출세액)
- $118,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88,000 = 30,000$ (세액)
- * 贈與稅 既課稅 控除額 計算
 - 贈與稅 實地課稅額 88,000
 - 贈與稅 控除限度額

$$118,000 \times \frac{50,000 + 200,000 + 10,000 + 300,000}{560,000 + 100,000} = 100,121$$

둘째, 2002년 「상속II」의 상속세 계산(單位:천원)

- $50,000 + 200,000 + 10,000 + 300,000 + 100,000$
 $= 660,000$ (유산가산 증여누적액)
- $(660,000 + 500,000) - (200,000 + 180,000) = 780,000$ (과표)
- * 200,000은 상속자기초공제임.
- * 배우자상속공제 180,000은 배우자상속기초공제 200,000과 혼인공제 14년간분 180,000의 합계액 380,000에서 이미 증여세에서 공제받은 배우자증여공제액 200,000을 차감한 금액임.
- $780,000 \times 40\% = 242,000$ (산출세액)
- $242,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118,000 = 204,000$ (세액)
- * 既課稅贈與稅 稅額控除額의 計算

- 贈與稅 實地課稅額 118,000
- 贈與稅 控除限度額

$$242,000 \times \frac{660,000}{660,000 + 500,000} = 137,689$$

다) 「상속III」의 경우

첫째, 2005년 증여세 계산(單位:천원)

- $10,000 + 300,000 + 100,000 = 410,000$ (가산할 贈與累積合算額)
- $(410,000 + 90,000) - 200,000 = 300,000$ (課標)
- $300,000 \times 30\% = 70,000$ (算出稅額)
- $70,000 - \text{既課稅贈與稅額 } 19,600 = 50,400$ (稅額)

* 既課稅贈與稅 稅額控除額의 計算

· 贈與稅 實地課稅額 計算

$$118,000 \times \frac{10,000 + 300,000 + 100,000}{50,000 + 200,000 + 10,000 + 300,000 + 100,000} = 73,303$$

· 증여세 공제한도액

$$70,000 \times \frac{10,000 + 300,000 + 100,000}{10,000 + 300,000 + 100,000 + 90,000} = 19,600$$

둘째, 2006년 「상속Ⅲ」의 상속세 계산(單位:천원)

- 300,000 + 100,000 + 90,000 = 490,000(遺産加算 贈與累積額)
- (490,000+500,000) - (200,000 + 260,000) = 530,000(課標)
 - * 배우자상속공제 260,000은 배우자상속기초공제액 200,000과 혼인공제 18년분 260,000의 합계 460,000에서 이미 증여세에서 공제받은 배우자 증여공제액 200,000을 차감한 금액임.
- 530,000 × 40% = 142,000(算出稅額)
- 142,000 - 既課稅贈與稅額 70,000 = 72,000(稅額)
 - * 既課稅贈與稅 稅額控除額의 計算
 - 贈與稅 實地課稅額 70,000
 - 贈與稅 控除限度額

$$142,000 \times \frac{490,000}{490,000 + 500,000} = 70,282$$

第 IV 章 世代省略移轉과 無償移轉 資本利得 課稅

第1節 世代省略移轉稅의 導入

1. 意義

世代省略移轉(generation skipping transfers)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을 다음 世代로 無償移轉함에 있어서, 손자 또는 증손자에게 직접 贈與 또는 遺贈을 하거나 信託을 설정해서 자녀에게는 平生收益權(life-interest or estate for life)을 부여하고, 그 자녀의 사망 후에는 손자에게 殘餘權(remainder interest)을 부여할 수 있는데¹⁾, 이러한 이 전을 말한다. 상속과세는 一世代 一回課稅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때, 직접증여 등에 있어서는 子女에 대한 課稅가 생략되고, 信託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課稅가 생략되는 셈이다. 이 방법은 부유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상속과세에 대한 租稅回避路이다.

이러한 世代省略移轉을 상속과세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水平的 公平의 관점에서 혹은 富의 集中 抑制的 관점에서 世代省略移轉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G. M. Brannon의 표현을 빌리면, “유

1) 財産을 無償移轉함에 있어서 A에게 평생 동안 그 財産의 사용·수익권을 주고, A의 사후에는 B가 그 財産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는 형태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경우 A가 가진 권리는 생애권(estate for life)이고(부분부동산권), B의 권리가 기대부동산권(estate in expectancy)의 하나인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이다.

언자가 世代를 뛰어넘어서 재산을 移轉시키는 것은 그의 일(his business)이지만, 이에다 節稅의 賞(a prize of tax savings)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²⁾.

2. 美國의 立法

가. 1969年 美國 財務部の 提案

미국 재무부가 世代省略移轉方法에 의한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世代나 두 世代를 뛰어넘어서 재산을 無償移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代替稅目(a substitute tax)으로 과세한다. 이 세금은 재산의 이전상에서 생략되는 世代에 과세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생략된 世代가 최종의 受贈者에게 그 재산을 移轉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으로 設計한다. 이 代替稅目은 世代省略移轉에 대하여 懲罰(penalty)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世代省略의 이전방법으로 재산을 無償移轉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했으리라고 보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省略되는 世代가 생존해 있다면 그가 그 재산을 무상취득했다가 바로 최종의 수증자에게 무상이전한 것과 같이 과세받을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증여자가 손자에게 無償移轉을 했는데, 그때 수증자(손자)의 부모가 生存해 있다면 그 부모로 하여금 그 無償移轉財産을 자신이 취득했다가 다시 그의 子女(증여자의 손자인 수증자)에게 이전한 것처럼 과세받을 선택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납세 신고를 하고, 수증자의 부모는 수증자(그의 子女)에게 증여한 것으로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W. D. Andrews, "What's Fair about Death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XXVI(Sept. 1973), p. 467.

이러한 代替稅目은 一世代 이상의 世代省略移轉이 있으면 언제나 적용한다. 만약에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했으면 이 代替稅目은 受贈者가 贈與者보다 25세 이상 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受贈者의 부모 등 생략이전되는 世代가 생존해 있지 아니하여 상기 選擇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平均稅率에 상당하는 세율인 60%를 적용한다³⁾.

나. 1976年の立法과 1986年の改正

미국은 1976년 개정법(1976 Reform Act Amendment)에 의하여 世代省略移轉稅(The Tax on Generation-Skipping Transfers)를 도입해서 1976년 6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새로운 稅目은 遺産稅(Estate Tax)와 贈與稅(Gift Tax)에서 완전히 분리·독립된 것으로 설정했으며,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을 마련했던 것이다(IRC. 2601~2622). 그런데 이 새로운 稅目은 모든 世代省略移轉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을 통하여 世代省略移轉을 하는 財産分與(間接省略移轉 : indirect skip)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즉 신탁제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조부가 직접 손자에게 재산을 분여하는 直接省略移轉(outright transfers or direct skip)에 대하여는 世代省略移轉稅를 과세하지 않는 구조였던 것이다⁴⁾.

1986년의 세제대개혁에서는 종전의 世代省略移轉에 관한 제규정을 모두 폐지시키고 전면적으로 새로 규정했다⁵⁾. 즉, 世代省略移轉方法에

3) Kurtz and Surrey, *op. cit.*(1970), pp. 1376~1377; McNulty, *op.cit.* (1983), p. 22. 이 당시 美國의 유산세 최고한계세율은 77%이었다.

4) McNulty, *op. cit.*(1983), p. 23.

5) Stephens and other, *op. cit.*(1983), Cumulative Supplement, No.3, p. S12-1~13-6; *Explanation of Tax Reform Act of 1986*(Chicago: Commerce Clearing House, 1986), pp. 427~434; 崔炳哲, 「美國의 相續課稅制度」,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1989, pp. 77~80.

의한 無償移轉에 대하여 課稅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친 것이다.

종전에 과세하던 신탁을 통한 間接省略移轉에 의한 재산의 無償移轉에 과세함은 물론, 신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世代를 생략하여 이전시키는 直接省略移轉에도 課稅하도록 했다. 즉 世代省略移轉稅의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世代省略移轉稅의 납세의무자는 直接省略移轉의 경우는 移轉者(transferor), 間接省略移轉의 경우 신탁재산분배(taxable distribution)에 있어서는 取得者(transferee), 信託受益終了(taxable termination) 등에 있어서는 受託者(trustee)이다(IRC.2603(a)).

移轉者 1인당 世代省略移轉稅의 免稅(GST exemption) 100만달러를 平生基準으로 인정하며, 이는 移轉者가 평생 동안 하는 世代省略財産移轉에서 임의로 배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IRC.2631(a)).

受贈者가 직계비속(a lineal descendant)이 아닌 경우 그가 移轉者의 출생일로부터 12.5년 이내에 출생한 者이면 이를 移轉者와 같은 世代로 보고, 受贈者가 12.5년 이상 37.5년 이내에 출생한 者면 移轉者보다 1세대가 젊은 첫세대로 본다. 그 다음은 25년간을 기준으로 1世대를 계산한다(IRC.2651(d)).

세율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연방유산세의 최고한계세율(50%)을 平均稅率(a flat rate)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최고한계세율에다 包含比率(the inclusion ratio)을 곱해서 계산된 率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包含比率에 의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0\% \times \frac{\text{配分使用하는 GST免稅額}}{[1 - \text{移轉財産價格} - (\text{州·聯邦遺產稅額} + \text{慈善寄附控除})]}$$

=包含比率에 의한 稅率

3. 우리나라에의 導入 摸索

가. 檢討의 必要性

세대省略方法에 의한 재산의 無償移轉에 대한 과세는 그 이론적 근거를 一世代 一回課稅原則에다 두고 있다. 相續課稅를 世代間 財産의 無償移轉에 과세하는 조세라고 이해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世代省略移轉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어 실정법으로 입법화되었는바, 그 이유는 신탁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 납세자들이 신탁제도를 이용, 世代를 생략하여 遺産을 無償移轉하는 방법으로 유산세와 증여세를 節稅하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遺産의 世代省略移轉은 信託制度를 이용한 間接省略移轉方法뿐만 아니라, 조부가 그의 자식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를 그의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遺贈하는 直接省略移轉方法으로도 가능하다. 이 직접생략에 의한 재산의 無償移轉은 신탁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世代省略移轉으로 재산을 無償取得하는 者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이 어려서 그 재산을 적정하게 投資에 利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도 소망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富를 직계친족집단 내로 集中시키면서 省略移轉되는 世代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⁶⁾.

이는 一世代 一回課稅의 원칙·應能負擔의 원칙·富의 광범위한 分散 誘引 등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그 어느 것과도 조화될 수 없다. 세대 생략의 財産無償移轉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이든 과세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6)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유형을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킨다고 할 때 直接省略移轉方法에 의한 富의 分割相續이 盛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株式 등 有價證券이 이 세대생략에 의한 無償移轉의 對象이 될 것이다(Tait, *op. cit.*(1983), p. 156).

나. 課稅方法

世代省略移轉에 대한 課稅方法은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다.

첫째, 世代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의 代襲相續은 世代省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직계촌수의 개념으로 그 世代의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無償移轉者와 無償取得者의 年齡差에 의해 그 世代 數를 구별한다. 이는 재산의 無償移轉者와 無償取得者(수증자·수유자)간의 平均年齡差를 합산해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현행 내국세입법에서는 12.5年差는 同一世代로 보고, 12.5년 이상 37.5년 내의 차이를 다음 世代로 보며, 그 다음은 25년의 年齡差마다 一世代로 보고 있다.

둘째, 課稅方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의 世代省略 無償移轉이 발생하면 먼저 世代省略移轉에 대한 과세액을 산정한다.

② 世代省略에 의한 재산의 無償取得者(최종 수증자 또는 수유자·상속인)에 대하여 본래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할 때에는 무상 취득재산 과세가액에서 世代省略 課稅額을 공제하도록 한다.

③ 世代省略移轉에 대한 과세액은 본래의 상속세·증여세 등에 가산하여 재산의 無償取得者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셋째, 世代省略移轉稅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각 사람당 일정 금액의 基礎控除를 허용한다. 증여누적합산과세기간 및 贈與의 死亡遺産에의 누적합산과세기간과 조화시켜 世代省略移轉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위의 기초공제액은 그 10年間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세율은 상속·증여에 적용하는 초과누진구조의 統合稅率을 기준으로 平均稅率을 구해서 그 수준의 세율로 설정하되 비례세율로 규정한다⁷⁾. 이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無償取得者에게 다시 본래의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는 世代省略移轉에 의해 회피한 상속세를 조세채권자가 회복시킴으로써 공평을 실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대생략에 의한 재산의 無償移轉行爲를 懲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납세자에게 생략되는 世代가 受贈 또는 相續을 받았다가 바로 最終無償取得者에게 移轉된 것처럼 가정하여 世代마다 본래의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한다⁹⁾. 이렇게 할 경우 少額의 재산을 世代省略移轉에 의해 무상취득한 者의 조세부담액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限界稅率이 前述한 平均稅率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략되는 世代가 생존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基礎控除만은 인정하도록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信託制度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납세자도 신탁에 의한 世代省略移轉으로 租稅를 회피하는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복잡한 규정은 아직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표(1993년 1월 1일 현재)를 보면 과세계급금액 10억원까지 세액이 3억 2,800만원이다. 이의 平均稅率을 구하면, $3\text{억}2,800\text{만원} \div 10\text{억원} \times 100 = 32.8\%$ 와 같이 된다. 이러한 경우 世代省略移轉에 적용할 비례세율은 33%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현행 내국세입법은 統合稅率이 최고한계세율인 50%를 바로 比例稅率로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Kurtz and Surrey, *op. cit.*(1970), p. 1376.

第2節 無償移轉과 資本利得課稅

1. 問題의 提起

가. 檢討의 必要性

조세의 應能負擔과 부동산의 일부 계층에의 집중억제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1989년의 토지 등 과세정책에 관한 立案에서 한 가지 누락시킨 제도가 있다. 토지 등 부동산의 所有集中은 自手成就를 통한 富의 형성과 富의 세대간 相續·贈與 등 무상이전을 통하여 가속화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稅制에서는 富(土地·建物·有價證券)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증가된 가치(資本利得)에 대하여 그것이 증여되거나 상속되는 경우에는 전혀 소득과세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富의 분산을 유도하는 토지과세제도에 뚫려 있는 稅網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현행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無償移轉에 대한 現行 資本利得課稅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所得稅가 부과되는 때에는 贈與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相法 29의 3③)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이 無償移轉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반면 소득세법은 “매도·교환·法人에 대한 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有償으로 事實上 移轉”(所法 4③)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所法 4②)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등이 有償讓渡될 때에 발생하는 差益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무상양도(相續, 贈與)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발생하여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서 피상속인·증여자 등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발생·누적된 資本利得에 대하여, 그 재산이 상속·증여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우리 세법구조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을 相續人·受贈者가 양도할 때 자본이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被相續人·贈與者의 취득가액인가? 아니면 상속개시시 또는 증여시의 당해 재산의 시가상당액인가?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금액으로 한다”(所法 45①)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所法 5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인·수증자가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取得價額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受遺·受贈 당시의 基準時價이다. 이는 피상속인·증여자의 取得價額을 상속인·수유자·수증자가 계승하는 것 (carry-over basis)이 아니고 상속 개시 당시 또는 수유·수증 당시의 時價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 (stepped-up basis or fresh-start basis)을 의미한다.

2. 無償移轉時 資本利得課稅의 論據

가. 肯定論

소득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資産價値의 매년 增加分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價値增加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이며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그것을 매각하면 未實現의 資本利得인 그 가치증가분은 쉽게 실현되어 現金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서 과세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가 그 資産

을 쉽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것 둘째, 資産의 評價가 어렵고 매년 평가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 셋째, 가치증가는 利得의 발생(거품)에 불과하고 實現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이다.

그런데 그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시기를 延長하는 것뿐이고, 과세 그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資産의 매각으로 실현되면 그 때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資産의 소유자가 資産의 매각을 연기해 오다가 사망하여 그 자신이 그것을 매각할 수 없게 되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課稅延期가 課稅免除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에는 그 資産의 가치증가가 利得으로 계상되지 아니하며, 반면 수증자·상속인 등은 무상취득한 資産을 매각할 때 資本利得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資産의 상속개시시점, 또는 유증·증여시점의 時價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立法例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 자본이득인 資産의 價値上昇分이 소득과세의 영역 밖에 방치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게 된다.

첫째, 稅收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이득세의 避稅로 인하여 稅收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둘째, 衡平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이득에 대한 課稅延期를 통해서 유산을 축적한 가족과 稅後所得으로 유산을 축적해 온 가족간에는 조세부담상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水平的 公平이 침해된다.

Gerald Brannon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不公平을 설명하고 있다.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들은 똑같이 그의 成年期間에 각각 매년 4만달러의 소득을 벌어서 兩者 모두 생활에 소비했다. 그런데 A는 投資資産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資産으로부터 매년 5만달러의 배당 및 이자소득을 얻으면서 세율 50%(이에만 적용되는 實效稅率이라고 가정한다)로 소득세를 납부했다. 40年 後 稅後所得으로 축적한 資産은 100만달러가 되었다.

B도 똑같은 액수의 投資資産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價値增加가 두드러지고 그 자산으로부터 配當이나 利子利得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가치증가도 매년 5만달러이었으며 사망시까지 계속 보유하여 40년 후 세금의 부담 없이 축적한 자산은 200만달러가 되었다.

A와 B는 같은 종류의 시설을 갖춘 집에서 생활했고, 같은 종류·수준의 음식을 먹었으며 休養도 똑같이 즐겼다고 보자.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A는 그의 유산 1백만달러를 稅後所得으로 축적했고, B는 미실현 미과세의 자산가치 증가에 의해 그의 유산 2백만달러를 모은 점 뿐이다. 특히 B의 유산 중 半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 구조의 덕으로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B가 사망할 때 자본이득과세를 계속 移延시키거나 그 과세를 免除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 批判論

사망시점에서 보유기간중에 발생·누적된 資本利得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기 때문(사망유산을 사망시점의 시가로 評價하여 과세하기 때문임)에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며, 만약에 사망시점에 상속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並課하면 二重課稅가 된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上記 Brannon의 事例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A는 유산의 형성과정에서 稼得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그 유산을 無償移轉할 때 다시 遺産稅(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B는 富의 가치증가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유산의 無償移轉에 대한 유산세만을 부담한다. 만약 사망시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二重課稅가 된다면, 그것은 A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사망시점에 자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것은 不公平하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서 그 재산은 장래 가

치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망시점의 時價로 유산을 평가하여 課稅하는 유산세의 경우에도 그러한 價値下落의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이 득과세 후의 가치하락은 당해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의 資本損失이 되어 稅負擔을 事後的으로 조정하게 된다.

無償移轉한 資産에서 발생한 가치증가분은 通貨價値의 하락을 반사한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增分에다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批判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증가원인은 오로지 인플레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無償移轉時의 자본이득과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득과세 전반에 대한 反對論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主要國의 論議와 課稅

가. 美國의 經驗

1) 1969年 美國 財務部 提案

미국 재무부는 1969년 無償移轉 재산에 대하여 資本利得課稅를 立法化하자고 제안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시까지 無償移轉하는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그 사망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그 가치증분을 소득으로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신고서에 계상하도록 한다. 자본자산의 가치증분은 長期資本利得으로 취급한다. 무상취득자가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소득계산상 원가로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無償移轉時에 평가된 금액에 의한다.

자본자산에 대한 가치하락분은 資本損失(capital losses)로 다룬다. 자본자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액은 이를 遺産에 대한 債務로 하여 課稅遺産額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한다. 소득세액이

공제되는 만큼은 적용받는 遺産稅 限界稅率이 낮아질 것이다.

2) 美國의 實施失敗

1976년 內國歲入法 개정에서는 生前移轉(inter vivos)과 遺贈(testamentary) 모두에 대하여 무상취득자의 소득계산상 공제하는 原價인 취득가액은 無償移轉者(transferor)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承繼取得價額基準(carry-over basis)이라고 한다(IRC 1923).

改正前 舊法에서는 生前無償移轉인 경우 그 무상취득자(transferee)는 증여자(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이월승계받는 것으로 하였고, 遺贈이나 相續인 경우 무상취득자(상속인, 수유자)는 이전자 사망 시점의 公正市場價格과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삼도록 했다 (stepped-up basis or fresh-start basis).

이는 비록 無償移轉을 處分으로 看做하여 자본이득에 대해 사망시점에 과세하지는 못하는 제도이지만, 적어도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를 계속 移延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완전히 소득과세를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1978년에는 실시를 1980년으로 연기시켰고, 1980년에는 내국세입법 제1023조를 삭제함으로써 취득가액의 移越承繼制度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 폐지 이유는 자산가 계층의 반대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표면적인 것은 과세행정에 있어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자의 實地取得價額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납세의무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承繼取得價額基準마저 버리고 新取得價額基準(fresh-start basis)에 의하고 있다(IRC. 1014).

나. 英國의 現行 制度

영국에서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 無償移轉에 대하여 資本利得稅

(Capital Transfer Tax)를 모두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세를 유산가액에서 債務로 공제해 주었다. 그러나 1971년 이후부터는 資本移轉稅만 과세하였던 것이다.

1986년 資本移轉稅가 상속세로 대체되었으므로 현재는 價値의 無償移轉에 대하여는 상속세만을 과세한다. 無償移轉에 대하여 자본이득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은 물론, 무상취득자가 그 資產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 계산상 적용하는 取得價額은 無償移轉 시점의 市場價額으로 한다. 즉 新取得價額基準(fresh-start basis)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新取得價額은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 割引된 금액(例: 농업용 재산의 50% 割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 전 시가를 뜻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 日本의 現行 制度

일본은 현재 증여·상속·유증 등에 의해 재산이 無償移轉되는 경우에 資本利得課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증여·상속·遺贈을 사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금액 또는 雜所得金額의 계산에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할 때의 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이때 증여는 法人에 대한 것에 限하고, 상속은 限定承認에 관계되는 것에 限하며, 遺贈은 법인에 대한 것 및 개인에 대한 包括遺贈 중 한정승인에 관계된 것에 한하는 것이다(日所法 59①).

취득가액의 移越承繼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居住者가 증여·상속·유증을 사유로 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양도소득·잡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그 者가 계속해서 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증여자·피상속인·遺贈者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계산을 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증여

·상속은 限定承認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며, 遺贈은 包括遺贈 중 한정승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4. 課稅方法과 그 選擇

가. 課稅方法

富가 無償移轉될 때 그 移轉者(상속인·유증자·증여자)에게 발생·누적된 資本利得에 과세하는 方法으로는 原則的인 資本利得稅 課稅方法과 예외적인 方法으로서의 承繼取得價額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이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新取得價額法이 채택되는 것이다.

資産의 無償移轉에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이나 승계취득가액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중 부동산은 세부담상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有利點이 소멸된다. 土地의 상속과세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평가는 실지시가의 80% 수준을 넘기 어렵고, 建物の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이 실지시가를 현저하게 밑돌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은 金融資産에 비하여 相續課稅上 상당한 우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재산가들이 부동산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의 無償移轉時에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방법이나 승계취득가액을 자본이득 산정시에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당히 治癒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들을 나누어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資本利得稅 課稅法

이 방법은 富가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無償으로 이전될 때 취득시점부터 무상이전시점 사이에 移轉者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을 인식하고 資本利得稅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자본이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과세하는바,

부분적으로 同一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不合理을 피하기 위하여는 상속·증여 과세를 할 때 먼저 과세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의 課稅評價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액으로 공제해 주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移轉者에게 발생해서 누적되었던 자본이득에 대하여 완전한 과세를 하게 됨으로써 有償移轉하는 경우와 稅負擔의 公平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 직전에 土地를 양도하고, 그 對價로 받은 현금·예금을 상속하거나,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거나 간에 租稅負擔 總額이 같아진다. 생전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지게 된다.

2) 承繼取得價額法

이 방법은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富가 無償移轉될 때 移轉者에게 保有期間에 발생·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을 과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富의 無償取得者(상속인·수증인·수유자)가 그 무상취득한 재산을 有償讓渡할 때 그의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은 유상양도가액에서 無償移轉者(피상속인·증여자·유증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즉 무상취득자가 그 재산을 유상양도할 때 무상이전자에게 발생하여 누적되었다가 이때에 무상취득자(무상취득자인 동시에 유상양도자)에게 실현되는 資本利得까지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承繼取得價額基準(carry-over basis)의 과세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無償移轉者에게 발생·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無償移轉時에 과세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유상양도할 때까지 장래로 移延시키는 것과 같다.

위 방법에 있어서는 富의 無償取得者가 이를 有償讓渡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보유했다가 사망시에 다시 상속으로 다음 世代에 無償移轉시킨다면 두 代에 걸쳐서 발생·누적된 資本利得에 대한 과세가 계속

장래로 移延되는 폐단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다.

3) 新取得價額法

이 방법은 상속·증여에 의하여 富가 無償移轉될 때에 상속세, 증여세만 과세하고 資本利得稅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재산을 유상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자가 상속·증여받는 時點의 시가로 하는 방법이다. 이 時價는 사실상 상속세 과세나 증여세 과세상 평가된 가액으로 하게 된다. 이를 新取得價額基準 또는 取得價額改新(fresh-start basis or stepped-up basis)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富의 무상이전시에 자본이득의 現實을 인식하지 않는 점에서 承継취득가액기준과 같으나 移轉者에게 그의 보유기간에 발생·누적된 자본이득을 앞으로 영원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본이득과세에 있어서 이 新取得價額法을 채택하고 있다.

나. 課稅方法的 選擇

1) 資本利得稅 課稅法的 檢討

이는 증여·상속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資本利得稅와 相續課稅를 함께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無償移轉 시점에 無償移轉者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이 實現되었다고 擬制하게 된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세를 먼저 과세하고 상속세 등을 다음으로 과세하느냐, 아니면 그 反對로 하느냐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달라진다. 그것은 양도소득 계산방법과 상속재산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稅率의 構造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讓渡所得稅 實效稅率 > 相續稅 實效稅率’의 경우에는 相續稅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세부담이 작고, 그 반대로 계산하면 세부담이 크

다.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한다고 할 때에는 논리상 자본이득세를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이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계산된 稅目的 稅額을 다음에 계산하는 稅目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한 쪽의 세액을 다른 쪽의 과세베이스에서 공제하는 것은 資本利得과 相續稅 課稅價額이 중복계산되는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세목의 적용 限界稅率의 합계가 10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55%이고 양도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60%일 때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이 세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 '60% + [(100% - 60%) × 55%] = 82%'가 되므로 양도차익과 상속재산가액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두 가지 세금의 부담이 82%를 초과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상속세율과 양도세율이 모두 超過累進構造이므로 82%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세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無償移轉時에 자본이득의 실현을 간주할 뿐만 아니라 無償移轉時에 資本損失(capital losses)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遡及控除(carry back)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無償取得者에게 승계시켜서 移越控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方法의 문제점은 租稅上の 理論이야 어떻든, 납세자가 건전한 常識을 가지고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문상으로 논의는 활발했지만, 실정법으로 立法化하지 못했고, 영국은 1965년에 立法化했다가 1971년에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는 데는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承繼取得價額法의 檢討

이 방법은 受贈者·相續人 등이 무상취득한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그의 자본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취

득가액을 贈與者·被相續人 등이 취득한 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carry-over basis).

이 방법에서는 無償移轉時에는 그 증여자·피상속인 등의 資本利得 現實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수증인·상속인 등 無償取得者가 증여·상속 등에 의하여 받은 재산을 유상양도할 때 無償移轉者와 無償取得者에 게 발생했던 자본이득의 現實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이다. 즉 무상이전자에게 발생했던 資本利得이 무상취득자의 당해 재산 유산양도시에 實現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는 日本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無償移轉時에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제도보다 간편하고, 資本利得이 實現된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납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實現可能性(feasibility)에 있어서 우수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3) 採擇이 바람직한 方法

우리나라는 현재 土地의 價格安定政策의 일환으로 미실현자본이득과세를 骨子로 하는 土地超過利得稅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와 調和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이전에 양도소득 과세 대상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의 實現을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方法이 마땅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과세방법을 현행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방법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절차가 승계취득가액법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논리는 현실에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無償移轉者에게 발생·누적된 미실현 자본이득이 최소한 영원히 稅網을 빠져 나가도록 放置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차선책으로 승계취득가액법의 채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소한의 租稅正義 實現에 불과할 뿐이다.

다. 取得課稅型과의 關係

1) 資本利得稅 課稅法의 경우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에서 資本利得稅 課稅法을 채택하는 경우 상속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無償移轉을 有償讓渡로 보아, 이에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과세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公課金 債務로 공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중 어느 사람의 公課金 債務로 공제할 것인가? 이는 공동 상속인·수유자간의 채무승계를 기준으로 하여 實地로 그 부담을 承繼한 자의 공과금 채무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의 실지승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각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공과금 채무공제를 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無償移轉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納付責任은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상속과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할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無償移轉되는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資本利得에 양도소득세 문제를 精算하는 방법으로는 이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이 가장 簡明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無償移轉되는 재산이 公益出捐 등에 해당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공익출연하는 者에게 양도소득세만은 과세된다고 하는 것은 어색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無償讓渡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資本利得稅를 과세하고, 그러한 租稅가 非課稅되는 경우에는 承繼取得價額法에 의하도록 하여, 無償取得時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자가 讓渡할 때 그 자본이득 계산상 그 승계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2) 承繼取得價額法の 경우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에서 承繼取得價額法을 채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無償移轉을 有償讓渡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과세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 채무로 공제할 양도소득세액도 없게 된다. 다만, 그 부동산 등을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상속인·수유자·사인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승계할 뿐이다.

共同相續의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 당해 부동산 등을 相續·遺贈·死因贈與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당연히 承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者가 상속 등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資本利得 算定은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持分比率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입증에 있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實地取得價額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1974년 12월 24일 개정, 법률 제2705호) 附則 제16조(1988년 12월 26일 개정, 법률 제4019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1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시점의 基準時價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第5章 要約 및 結論

富의 世代間 無償移轉은 家族共同體의 安全과 保護에 필요한 限度 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인간의 本性에 적합하므로 國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財産권의 私有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적 가치이며 동시에 基本秩序이다. 그런데 가족의 안전·보호 등의 필요를 현저히 초과해서 巨大한 富가 世襲에 의해 일부 계층으로 集中하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集中된 富의 永續化는 소수계층의 다른 다수계층에 대한 經濟的 支配를 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의 Roosevelt 대통령은 經濟力을 상속받는 것은, 政治權力을 상속받는 것이 민주정부를 수립한 理想과 맞지 아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富의 集中이 일부 계층에 固着化되는 것은 사회계층간의 階層 上昇移動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활력을 저해하며, 새로운 世代들의 사회적 출발점의 균형을 상실시켜 機會均等의 正義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富를 어떤 방법으로 각 계층간에 합리적으로 分散시킬 것인가? 그 방법의 하나로 相續課稅制度의 합리적인 改編整備를 들 수 있다.

富의 分散問題를 조세수단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그 방법으로는 沒收稅率을 설정해서 家族共同體의 안전과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유산의 대부분을 조세로 公共部門이 흡수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면 상속과세제도가 개인의 創意的 經濟활동에 주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세율로 과세하되, 과세제도 안에 富의 分散誘引裝置를 설정하여 民間部門 안에서 대부

분의 富가 가급적 넓게 분산되도록 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상속과세의 類型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後者의 입장을 택하고자 한다.

또한 상속과세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富의 分散問題 외에 應能負擔과 家族共同體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遺産課稅型(estate type), 일본과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取得課稅型(inheritance type)을 應能負擔과 富의 분산, 그리고 집행상의 難易度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유산과세형은 상속과세의 부담이 無償移轉者의 재산에 歸着한다고 전제했고, 遺産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그 적용받는 限界稅率이 동일해서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應能負擔의 원칙에 배치되고, 나아가 그 제도 자체가 富의 分散을 유인하는 기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遺産課稅型을 채택하고 있는데, 租稅行政의 技術水準에 비추어 보아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취득과세형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의 應能부담에 적합한 공평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자체에 財産家가 富를 분산시켜 無償移轉시키고자 하는 誘引機能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生前移轉(inter vivos transfers)에 대한 과세와 死亡移轉(death transferers)에 대한 과세는 贈與 상호간의 累積合算課稅期間과 증여의 상속유산에의 누적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年에서 10年으로 연장하여 분할증여를 통한 높은 限界稅率의 적용회피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기간들을 短期間으로 규정하면서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을 따로 정하고, 증여세 세율을 상속세 세율보다 높고 누진구조가 급격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누

적합산과세기간의 短期化에서 오는 보완기능의 부족을 높은 限界稅率과 급격한 초과누진구조의 증여세율로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生前贈與에 중과세하는 방법으로 생존시의 無償移轉財産에 懲罰을 가하는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누적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관계 없이 兩者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單一稅率表(a single rate schedule)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단일세율표의 共通適用은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할 것인가,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재산가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中立性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셋째, 配偶者間 無償移轉(interspousal transfers)에 대하여는 부부가 同一世代에 속하고, 축적된 富는 배우자 쌍방이 共同努力한 결과이며, 생존배우자의 基本生活 保障이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미국이나 영국처럼 全額控除, 또는 免稅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의 社會慣習이 아직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民法上의 夫婦間 財産所有制度를 개정하여 결혼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아내에게도 일정한 持分權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민법규정을 토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면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민법의 그러한 개정이 뜻과 같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稅法의 獨自的 立場에서 課稅輕減方法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① 배우자상속기초공제액은 2억원 정도로 한다. 이는 혼인기간의 長短과는 관계 없이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基礎控除額은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과세평가의 수준·물가수준·民富의 축적수준·사회 의식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시기에 맞게 조정해 가야 한다.

②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는 혼인기간의 長短에 따라 差等을 두는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 1년에 대하여 공제하

는 금액을 결혼기간 10년 이하는 年 1천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年 2천만원, 20년 초과는 年 3천만원, 그리고 혼인공제액의 最高限度額은 6억원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다. 배우자상속기초공제액 2억원과 혼인공제액을 합제한 공제액은 최대 8억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배우자간의 재산증여에 대하여는 配偶者婚姻控除를 둔다. 이는 기초공제 없이 혼인기간 1년에 2천만원씩으로 설정한다. 기초공제가 없으므로 최저공제금액을 6천만원으로 하며, 最高控除額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限度를 둔다.

④ 稅率一本主義로 하면서 증여세의 상속세에 대한 보완기능을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증여와 증여 상호간, 그리고 증여와 사망유산 상호간의 累積合算課稅期間을 10년으로 하면서 아울러 그 누적합산하는 기간 내에서라도 배우자증여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重複的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받은 배우자증여혼인공제는 상속과세상의 배우자혼인상속공제액에서 差減하도록 한다.

넷째,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統合된 單一稅率表로 한다. 이 정도의 상속세 輕減으로 兩性平等의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는 못하지만, 과도기적 방법으로는 次善의 것이라고 評價되었다.

상속과세의 세율은 最高限界名目稅率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고한계명목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계급금액(bracket)은 현행의 10억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될 경우 유산분할 후 각 상속인 등의 取得財産價額 기준으로 이 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율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다섯째, 世代省略移轉(generation-skipping)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상속세가 一世代 一回課稅를 原則으로 한다고 볼 때, 재산이전이 생략되는 世代에 대한 상속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不當한 租稅回避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財産의 信託制度가 발

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信託에 의한 世代省略移轉(間接省略移轉)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遺贈하는 것과 같은 直接省略移轉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世代省略移轉에 대하여는 법정세율의 平均稅率을 적용하여 자산이전이 생략되는 世代가 부담했어야 할 세액을 精算해서 이를 무상취득자에게 追加的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납세자에게는 이 方法으로 과세받든가, 아니면 재산이전이 생략되는 世代가 재산을 무상취득해서 즉시 최종의 수증자·수유자에게 無償移轉한 것처럼 간주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世代는 直系寸數로 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25년의 연령차를 1世代로 계산하면 될 것이다.

여섯째, 財産이 無償으로 移轉되는 거래에 資本利得稅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조세이론상으로는 과세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자본이득세 과세법'으로 轉換하는 것은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할 수도 있다. 무상취득자가 有償讓渡할 때 양도차의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당초의 無償移轉者(transferor, donor)의 取得價額을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시켜서 공제(carry-over basis)하는 방법의 채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제도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증여·유증 등의 재산에는 가급적 資本利得稅를 과세하는 方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 중 상속인 등이 납부의무를 승계한 세액은 각 상속인의 相續財産價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이를 공과금 채무로서 공제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일곱째, 취득과세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구상했다.

① 納稅義務者는 상속·遺贈·死因贈與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상속

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② 과세상속재산은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각 相續人 등이 취득하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유산의 취득으로 看做되는 재산으로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遺贈에 의하여 公益出捐하는 재산과 상속인 등이 공익출연하는 재산은 과세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이 공익출연재산의 비과세에는 현행법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된 事後管理制度를 수반시킨다.

③ 債務 등의 공제는 현행 제도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각 상속인 별로 각자가 승계한 채무액·公課金·부담한 葬禮費用만을 공제하게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상속유산의 僞裝分割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일본의 방법인 ‘法定相續分課稅方法’을 채택한다.

④ 상속과세상의 人的控除는 법정상속인 1인당 2억원 정도의 상속자 기초공제, 前述한 配偶者相續控除, 年 5백만원 정도에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산정하는 未成年者控除, 연간 치료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에 평균수명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산정하는 障礙者控除를 두도록 한다. 현행 자녀공제·주택상속공제·농지상속공제 등은 이를 폐지한다. 이들 공제는 상속기초공제로써 충당이 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구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증여세는 이미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改編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증여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 하는 것은 현행법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은 본래의 증여와 의제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하되, 公益出捐財産과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에 규정된 재산을 과세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특히 公益出捐財産의 非課稅에 대하여는 現行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된 事後管理制度를 수반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③ 稅率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統合稅率로 한다.

④ 증여세는 1년간 동일인으로부터 受贈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年間單位로 과세하는 期間稅로 한다.

⑤ 증여세 과세상의 控除로는 연간 과세최저한 금액인 年間控除를 두고, 人的控除로는 배우자증여공제, 증여누적합산과세기간(10년간)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受贈者마다 4천만원의 '直系尊卑屬贈與控除'를 둔다. 그 외의 수증자에게는 일체 증여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방법은 現行 방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증여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翌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증여세의 豫定申告納付制度를 함께 채택해도 무방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疇洙, 『親族相續法』, 第3全訂版, 서울: 법문사, 1989.
- 李哲松, 「西獨의 相續課稅制度」,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서울: 한국 조세연구소, 1989.
- 李泰魯, 『租稅法概論』, 1988 개정증보판, 서울: 조세통람사, 1989.
- 崔明根, 『相續課稅論』, 서울: 稅經社, 1990.
- 吉岡建次 外 2人, 『シャープ勸告の研究』, 東京: 時潮社, 1984.
- 金子宏, 「相續課稅の課稅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制改革の視點: 地價の高騰と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月刊 稅理 第1別冊附錄, 東京: ぎょうせい, 1987.
- _____, 「所得稅とキャピタルゲイン」, 租稅法學會(編), 『所得稅法の諸問』, 租稅法研究 第3號, 東京: 有斐閣, 1975.
- _____, 『租稅法』, 第2版, 東京: 弘文堂, 1989.
-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租稅(2) 稅務行政』, 第8卷 附錄, 東京: 東洋經濟, 1979.
- 白崎淺吉, 「相續稅の諸問題」, 日本の稅金, 『ジュリスト』, 増刊 總合特輯, No.33, 東京: 有斐閣, 1984.
- _____, 『相續稅法解説』, 東京: 稅務研究會, 1975.
- 北野弘久, 「相續稅法の構造」, 『コンメンタル相續稅法』, 東京: 勁草書房, 1974.
- 日本稅法學會運營委, 「西ドイツ相續稅法の邦譯」, 『稅法學』, 通卷 406, 407, 408號, 京都: 稅法研究所, 1984~85.
- 日本稅制調查會, 「相續稅制度改正に關する答申」, 『抜本的見直についての答申・報告・審議資料總覽』, 1957.

- _____, 『税制の抜本的見直しについての答申・報告・審議資料総覧』, 1988.
- 村井 正, 「資産課税を考える: 相続税 贈與税を中心に」, 『租税法: 理論と政策』, 東京: 青林書院, 1987.
- Bernheim, B. Douglas, "Does the Estate Tax Raise Revenue?", *Tax Policy and Economy*, ed. by L. H. Summer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7.
- Bittker, Boris I. and Elis Clark,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4.
- Brannon, G.M., "Death Taxes in a Structure of Progressive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26, 1973.
- Brittain, John A., *Inheritance and Inequality Statu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8.
- _____, *The inheritance of Economic Statu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 Collie, Marvin K., "Estate and Gift Tax Revision", *National Tax Journal*, Vol. 26, 1973.
- Cooper, George, *A Voluntary Tax? New Perspectives on Sophisticated Estate Tax Avoida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 DeWind, Adrian W., "The Approaching Crisis in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Cal. L. Rev.*, Vol. 38, 1950.
- Eisenstein, Louis, "Modernizing the Estate and Gift Taxes". Ronald B. Welehed, *The Preceedings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1946.
- Groves, Harold M., "Retention of Estate and Gift Taxes", *Cal.L.Rev.*, Vol. 38, Mar. 1950.
- Harriss, C. Lowell, "Source of Injustice in Death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7, 1954.

- Kaldor, N., *An Expenditure Tax*,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5.
- Kay, J.A. and M.A. King, *The British Tax System*,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Kurtz, J. and S.S. Surrey, "Reform of Death and Gift Taxes: The 1969 Treasury Proposal the Criticism and Rebutal", *Columbia L. Rev.*, Vol. 70, 1970.
- Looker, Charles., "The Impact of Estate and Gift Taxes on Property Disposition", *Cal. L. Rev.*, Vol. 38, 1950.
- McCutcheon, Barry D. and Chris Whitehouse, *Inheritance Tax*, 3rd ed., London: Sweet and Maxwell, 1988.
- McNulty, John K.,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3rd ed., St. Paul: West Publishing, 1983.
- Musgrave, R. A. and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 Hill, 1973.
- OECD, *The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79.
- _____, *The Taxation of Net Wealth, Capital Transfer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Paris: OECD, 1988.
- Pechman, Joseph A., *Federal Tax Policy*, 4th ed.,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3.
- Rignano, Eugenio,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Inheritance Tax*, translated by William J. Stulz., New York: Alfred A. Knopf., 1924.
- Rudick, Harry J., "A Proposal for an Accession Tax", *Proceeding of*

- the 39th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Sacramento: National Tax Association, 1946.
- _____, "What Alternative to the Estate and Gift Taxes?", *Cal. L. Rev.*, Vol. 38, 1950.
- Seligman, Edwin R.A., *Essays in Taxation*, The MacMillan Co., 1921.
- Shoup, Carl S., *Federal Estate and Gift Tax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6.
- Shultz, William J., *The Taxation of Inheritance*, Boston: Houghton Mifflin, 1926.
- Stephens, Richard B., Guy B. Maxfield and Stephen A. Lind,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Boston: Warren, Gorham and Lamont, 1987.
- Tait, Alan A., *The Taxation of Personal Wealth*,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7.

